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교재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잡이

찍은날/ 2002년 12월 27일

펴낸날/ 2002년 12월 27일

지은이/ 강순원 · 김한민 · 백영애

엮은곳/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펴낸이/ 김창국

펴낸곳/ 국가인권위원회

100-842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 빌딩(대표전화 02-2125-9700)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디자인 · 찍은곳/ (주) 다산 02-325-0262

표지그림/ 강우근

ISBN/ 89-90475-09-0-93370

교·사·를·위·하

인권교육 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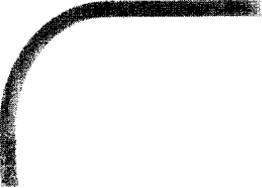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까지 발표된 우리나라 학교의 인권상황을 다루는 연구물들은 학교가 얼마나 인권의 사각지대인지를 현실 사례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 내용에 대부분 동감하지만, 교사들은 이런 연구물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는다. 똑같은 경우가 체벌에도 적용된다. 조사에 의하면 교사들의 경우 30% 미만만이 교육적 필요성에 의해서 체벌을 한다고 하는데 반해, 학생들의 경우는 70% 이상이 체벌당한 경험이 있고 체벌 근거가 교육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만큼 가르치는 입장과 배우는 입장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나온다. 교사들의 경우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사로서의 권리교육이 강조되는 반면 학생들이 이해하는 인권교육은 '학생도 인간이다' 라는 측면이 일차적으로 강조된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권리와 의무간의 상호의존성이라는 기본 원리로서 접근하지 않고 권리교육으로만 이해할 경우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교육당사자간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교육현장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인성교육이나 도덕교육에서도 인권교육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현장에서의 적용상의 어려움을 표출한다. 특히 우리 교육현장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인 입시위주 교육의 교육여건 자체가 인권교육을 실천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발상을 바꿔보면 이러한 교육현실 때문에 인권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역설도 성립한다. 현재의 한국 사회는 과거의 좋고 나쁜 것이 다 응집되어 형성된 역사적 부산물이며,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제기능을 하게 된다면, 학교는 사회전반에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차적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공동체로 학교를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 관료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교육당사자들 스스로가 교육문제를 인권적 각도에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대안적 체제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본 책자는 바로 이러한



교육공동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안내서인 것이다.

이 책은 인권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한 번 쬐은 읽고 생각해봤으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인권교육과 관련된 교원연수 프로그램과 관련시켜 생각해 본다면 연수과정 중 가장 첫 머리의 '인권교육 총론' 쬐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소 추상적이거나 너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제4부는 인권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해 인권교육의 가장 중요한 쟁점 열 다섯 가지를 선별하여 각각의 주제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그 목적과 내용, 그리고 가능한 교육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제에 따라 다소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이를 최소한의 방향제시라고 본다면 각각의 주제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학습자료를 통하여 찾아보고, 학년별로 활동을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좋은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이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사를 위한 교양서로 읽히기를 원한다. 아울러 본 책을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다음의 몇 가지를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첫째, 학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부딪히고 만나는 교육공동체이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바로 교육공동체를 특성지우는 준거가 된다. 학교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우며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토대위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본 책자가 목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역사로 인해 교사양성이나 교원연수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인권교육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차적인 안내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이 책자는 무엇보다 교사로서의 자기 이해를 인권적 관점에서 재조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학교에서 인권을 논할 때 학생들의 인권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장 약자이기 때문이지, 교사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교사 역시 인권조약에 열거된 모든 권리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 인권의 주체이며, 인권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사회적 환경에서 교사의 인권도 심각하게 제한당해 온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에서 교사는 자신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



를 보장받는 틀 위에서 교권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자신의 존엄성을 손상받지 않으며, 주체적인 인격으로 대우받고 적극적으로 학교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가장 좋은 인권교육이 된다.

셋째, 학교교육의 특성상, 교사는 학생과 민감한 상호작용을 피할 수 없다. 교사는 학생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존엄한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권교육의 기본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체벌, 소지품 검사 등과 같은 학생 사생활 침해의 문제, 왕따를 포함한 학생간 폭력, 학생에 의한 교사의 인격 모독 등은 인권교육의 일반적 원칙 위에서 학교공동체가 잘 정리해야 할 주제인 것이다. 특히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기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에 인권문화를 꽃피우게 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이 책자는 모든 학교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안내서이다. 이것은 교사들이 개별 학교, 담당 과목, 학교 수준 등에 따라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제공한 기본 자료이다. 이것을 토대로 교과별로 주제에 맞춰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창의적 재량활동 프로그램으로 10차시를 짜본다거나 아니면 특별활동 반을 운영해 본다거나 학급활동을 계획해 볼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세계화, 지식정보화, 그리고 문화화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학생들은 자기 존엄성을 토대로 자신감있게 세계와 대면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이제 세계인이 지향하는 교육의 공통 주제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제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사회에 인권문화를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적 수단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제목대로 인권교육에 대한 열망을 지닌 교사들을 위한 훌륭한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교육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다음 단계의 인권교육 교재 및 매뉴얼들이 활발히 개발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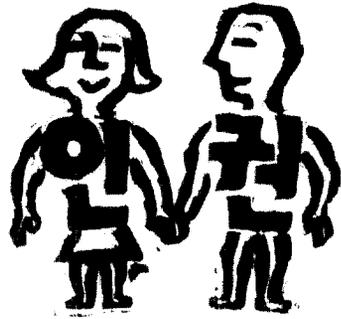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잡이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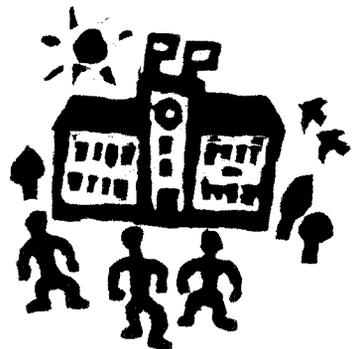


○ 머리말	5
I. 인권교육의 정의와 목표	11
1. 인권이란 무엇인가? _12	
2.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_13	
3. 인권교육의 일반적 목표 _14	
II. 인권교육의 발자취	16
1. 인권을 향한 인류의 노력 _16	
2.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문화의 증진 노력 _21	
III. 학교 인권교육의 환경	25
1. 학교 인권교육의 현재적 조건과 가능성 _25	
2. 학교 인권교육의 기본 방향 _30	
3. 인권교육의 교수·학습 원리 _32	
IV. 인권교육의 내용	34
1. 국가권력과 인권 _34	
2. 권리와 의무 _40	
3. 정의와 평등 _44	
4. 차이와 차별 _49	
5.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_53	

- 6. 자유로운 자기표현 _58
- 7. 공동체와 민주적 참여 _61
- 8. 문화적 권리와 관용 _66
- 9. 성차별로부터의 자유 _70
- 10. 신체적·정신적 차별로부터의 자유-장애인 인권 _75
- 11.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_79
- 12. 노동의 권리 _83
- 13. 이주의 자유와 난민의 권리 _88
- 14. 평화와 비폭력적 갈등 해결 _92
- 15. 국제연대와 인권 _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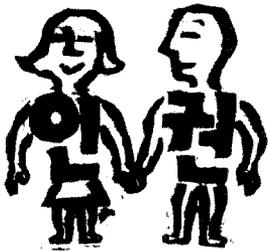
- V. 학교 인권교육의 실천 단위 100
- 1.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접근 _101
- 2. 중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접근 _104



- 참고문헌 109
- 인권달력 112
- 인권 관련 사이트 114

인권교육의 정의와 목표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3. 인권교육의 일반적 목표



인권이란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성별, 인종별, 계급별,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자유, 평등,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일차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인권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억눌려왔다. 여성의 참정권이나 유색인종의 참정권은 제한되었으며, 난민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했다. 장애인의 권리도 폭넓게 수용되지 못했으며, 장애인을 포함한 여성,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개인의 사상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국가에 의해 제한되었다. 이러한 인권의 제약은 자유와 정의, 평등을 향한 오랜 투쟁의 결과 오늘날 상당히 개선되었고 이제 인권은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기본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의 인권에 대한 바람을 표명한 도덕적 선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이 이를 비준하고 국내법에 그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후속 규약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조건에 따라 인권이 실현되는 기반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인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엔 개인의 사적 권리가 국가 주권보다 덜 중시되고 있고, 많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식민하에서는 국가 주권을 비롯한 민족 모두의 인간적 권리가 부정당하였고, 해방 후에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시련을 겪었으며 그

후유증을 오늘날까지 앓고 있다. 다행히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그에 따른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이제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써 모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 인권이란 무엇인가? ■■■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권리가 본래적인 것이고, 보편적이며,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며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전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

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등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사람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는 모든 인류의 최고 이상으로서 선포되어 있고, 사람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은 반드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절대 필요하고.....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권이란 첫째,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적 권리, 즉 천부인권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등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인권의 보편성이 표명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성,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입장,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어느 누구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유린할 수 없다. 인권은 인류 최고의 이상으로서 선포된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침해는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이다. 국가의 이름으로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노예제도, 식민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즉 인권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양도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넷째, 인권과 자유, 정의 그리고 평등은 나누어질 수 없는 공통의 목적성을 지닌 것으로서 법과 제도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인권을 보호하여 누구도 억울함을 폭력에 의지하여 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평화적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세 범주로 구성된다.

1. **시민적·정치적 권리** : 자유권으로 분류된다. 개인의 생명·자유·안전, 고문과 노예화로부터의 자유, 정치적 참여·의견·사상·표현·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2. **경제적·사회적 권리** : 사회권으로 불린다. 노동권, 교육권, 자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권, 그리고 적절한 생활수준과 음식, 주거, 건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복지권
3. **환경·발달권** : 지구를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보존하여 지나친 개발을 막고 모두가 적합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 범주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조건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권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킬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책임과 권리 혹은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교육되어야 한다.

2.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



인권교육이란 다양한 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문화 창달을 위해 적절한 교육 기법을 써서 적절한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전 사회 구성원을 교육하고 인권 관련 정보를 확산시키는 종합적인 노력을 말한다. 즉 인권에 대한(about), 인권을 위한(for), 인권의(of) 교육을 말한다.



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about)에서부터 어떻게 권리를 보호하고 예방하며 비폭력적 인권문화를 증진하게 할 것인가(for)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인권을 인권적인 방법으로 가르침으로써(이) 개인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종합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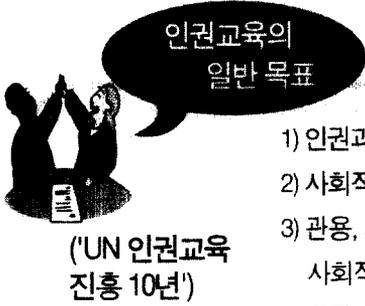
그런 각도에서 인권교육은 첫째,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열망을 인식시키고, 둘째, 인권침해 사안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행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하며, 셋째, 사회적 권리가 부정된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인류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열정을 지니도록 이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 교육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이란 인권과 그 보호기구에 관한 정보를 준비하고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가치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문화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태도를 배양하기 위한 정의(情意)적 기반을 말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인권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권교육 기법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교사들을 재훈련시키는 일이 불가피하다.

특히 학교는 인권문화의 증진과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교육장이다. 체계적인 인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인권이 실천될 수 있는 문화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절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교육과정 개발을 정책적으로 시작할 때 인권을 핵심 주제로 설정하여 전 교과에서부터 학교 내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3. 인권교육의 일반적 목표 ■■■■■

인권교육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각 회원국에 'UN인권교육 진흥 10년' 기획안을 권고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국가별 실행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 목적은 인권의 개선은 법적, 제도적 정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 인권문화를 증진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절차에 있어서 평화와 인권 존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찰, 미디어,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 등에 대한 일종의 가해자적 관점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차원의 인권교육과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여성, 난민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의 인권보호 교육을 동시에 권고하고 있다.



- 1)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 2)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개인의 인성과 타고난 존엄성의 충분한 개발
- 3) 관용, 사회적 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 모든 민족들간의 우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 4)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5) 세계시민으로서 평화를 증진하려는 국제사회의 활동을 촉진

사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인권이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에 의해 제한되고 억압당해온 탓에 인권교육이 지나치게 정치 저항적인 의미로 채색되어왔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인권침해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침해에 대한 저항과 인권보호문화 증진을 위해 인권교육은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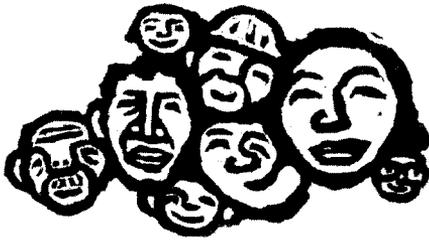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일반적 목표를 말할 때는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여 공동체성의 강화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일반적 목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6) "분단국가로서 남북한 공히 평화로운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상호 인권 존중"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봉건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기본적 자유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단일민족 국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적 구호 속에서 세계시민적 책무 등이 강조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은 보편적 인권내용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가르치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걸어온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권문화를 창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교육의 발자취

1. 인권을 향한 인류의 노력
2.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문화의 증진 노력



1. 인권을 향한 인류의 노력 ■■■

오늘 날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편적 인식으로서 인권은 결코 순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인권 옹호자들이 자유와 평등을 외치다가 투옥되고 박해받았으며 많은 민중들이 인권쟁취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한 값진 희생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권은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역사적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출되는 수많은 인권적 요구들이 식민지 권력, 군부독재 권력, 그리고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억압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해방, 민족통일, 그리고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박해받았고 심지어는 죽어갔다. 아직도 민주인권국가 실현의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엄청난 인권신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적 권리가 일차적으로 부정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길거리에서 인권유린에 항의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권과 기본적 교육권을 요구하는가 하면, 학생·청소년들도 억압적인 교육제도로 인해 기본적인 인간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비인간적 처우와 차별에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권실현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적, 법적, 제도적 수준에서의 인권 장치 마련과 함께 평화적 인권문화의 구현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궁극적 과제이고 이를 향한 지속적인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역설적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선언의 기초가 닦이게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참화 속에서 더 이상 인간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 유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연합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즉 유엔 헌장에서 제시한 대로 국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적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하고 국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인권보호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하면서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선언이란 각국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도 없고 불이행시 국제기구가 회원국을 강제할 국제법적 효력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모든 국가가 합의하여 준수하기로 한 국제규약만큼 따라야 할 도덕적 규준의 성격을 지닌다. 대부분의 회원국들도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정신을 국가의 헌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의 강제력을 부과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한 각종 협약과 의정서들이 채택되고 회원국들간에 상호 비준되었다. 이것은 국내법과 마찬가지로의 효력을 지니는데, 그 중 특별히 인권신장과 관련되는 협약들은 다음과 같다.



- 1) 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규약으로 지칭, 1966)
- 3)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 규약으로 지칭, 1966)
-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 5)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 6) 고문 및 그 외 잔인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

7)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 및 사회권 규약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에서는 탈 식민지화운동이 민족자결과 인종차별 반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도처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유린당하고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일 뿐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여 단지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인국들 사이에서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규약이나 협약의 형태로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1966년 A, B규약, 즉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으로 구체화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비로소 A, B규약에 의해 승인국들 사이에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각국별로 그 기준에 따라 인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구속받게 된 것이다(세계인권선언과 A, B규약을 합해서 ‘국제인권장전’이라고 한다).



인종차별 철폐 협약과 여성차별 철폐 협약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차별과 관련하여 UN은 특히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들을 선포하게 되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1965년 인종차별 철폐 협약과 1979년 여성차별 철폐 협약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혹한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에 의한 인종차별은 교육 및 고용, 그리고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무참한 인권유린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차별에 저항하여 제3세계 민족자결운동과 미국의 흑인해방운동이 성장한 결과 인종차별 철폐 협약이 탄생하고 그 후 각종 조약으로 더 구체화된다.

또한 인구의 반인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 세계에서 차별받고 있고 여성의 인권이 심하게 왜곡되고 유린되어 교육, 고용, 사회적 기회에서 차별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 가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각국은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 비준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성차별과 성노예화 및 성폭력은 이후 인류문명의 적으로 규정되고 여성인권이 국제법적 보호 속에서 신장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고문 및 비인도적 처벌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전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가운데 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압제와 민중들에 대한 자유권적 박해가 지속되어 개인의 자유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정도로 고문과 탄압이 자행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구속되고 감옥에서 비인도적으로 대우받고 정치적 항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고문과 사형을 당하는 조건 속에서 고문 및 비인간적 처벌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984)은 동서냉전 하에서의 민주화운동에 상당한 공헌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정치적 권력에 의한 폭력의 일상화와 그로 인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 그리고 각종 사회제도에서 이루어지는 비인도적 처우는 인류문명의 적으로써 전 세계인이 다함께 분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적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 반독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많은 국가에서 시민들이 형제애적 연대감을 갖고 한국의 인권유린에 대해 항의하고 탄압받던 민주인사들을 후원해 주었다.



어린이·청소년 권리 협약

그런 가운데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이 전쟁과 빈곤 속에서 적절한 사회적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인 중심의 세계에 홀로 방치되어 있었다. 게다가 어린이·청소년들은 성인 중심의 세계에서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서, 고유한 인권을 지닌 자기 삶의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상황에서 세계 어린이들이 존엄한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서 어엿하게 대우받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청소년 권리 협약(1989)은 무엇보다도 인권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변화를 실감하게 만들었다. 어린이·청소년 권리 협약 제3조가 밝히고 있듯이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모든 사회적 결정은 그들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 시 함께 동거할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 선택 등에 있어서 어린이·청소년들의 행복 혹은 소망에 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이 전통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으로서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랑의 매로서 미화되는

교육적 차별 역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위해를 금지하는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에 위배된다. 영유아 학대 혹은 학교에서의 각종 표현상의 제한, 가난한 어린이·청소년들의 방치 역시 본 협약에 위배된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들도 자유권적 권리나 적절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고 볼 때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하고 자기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실시와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보호를 위한 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세계가 서로 왕래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 인종으로 구성되기보다는 다민족적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류사회를 이끄는 지배권력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소수자(minority)라 하여 억압하고 차별하며 그들의 존재 기반을 사회 속에서 부정하여왔다. 그런데도 엄청난 수가 때론 정치적 이유로 때론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국경을 넘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국가에서 살고자 이동하였다. 이미 형성된 거대한 지구촌이 그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억압, 차별은 심각하다. 이에 국제적인 난민을 포함하여 해외 이주노동자들도 동등한 기본적인 인권을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족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조건을 마련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보호를 위한 협약'이 1990년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3년도 상반기내에 국제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951년에 채택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는 130여 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다. 이것은 지구촌이 더 이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구약탈지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지구마을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만년 단일민족의 배타적 풍토가 지배적이어서 살 곳을 찾아 우리나라에 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억압과 차별의 정도가 무척 심하다.

경제적 발전 못지않게 세계적 시민의식을 발전시켜 해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따뜻한 이웃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들의 기본적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외 UNESCO나 ILO 등에서 선언한 각종 인권증진 문서 및 사형제도 폐지나 노예제도 금지 등을 비롯한 특별 사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등이 선포되고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각종 문건들이 국내법적 효력 이상의 강제성을 발휘하며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되었다.

2.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문화의 증진 노력 ■■■

인권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 못지않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영역이며, 이를 위해 UN은 1993년 총회에서 1995~2004년을 UN 인권교육 10년(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으로 선포하여 국가별로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미 2000년에 국가별 실행 여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마쳤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라고 표명하며, 교육권 조항인 제26조 제2항에서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와 인종 또는 종교집단 사이에 이해, 관용,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인권교육이 교육의 기본 정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모든 인권 관련 협약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며 제도적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인종차별 철폐 교육, 성차별 철폐 교육, 고문 금지 및 예방 교육, 어린이 권리 교육, 소수자 권리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3조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를 구체화하여 교육권을 밝히고 있는데 이때 인권을 교육의 기본 원칙이 된다.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의 완전한 발달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이나 모든 인종, 종족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하고,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인종차별 철폐 협약 제7조

“국가는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 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 및 이 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여성차별 철폐 협약 제10조

“국가는 교육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하며 여덟 가지의 교육적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고문 방지 협약 제10조

“국가는 여하한 형태의 체포, 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 심문 또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 집행 요원, 의료인, 공무원 및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 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가 충실하게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
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다. 부모의 체류 또는 취업
이 비정규직이거나 취업국에서의 자녀의 체류가 비정상적임을
이유로 공립의 취학 전 교육기관이나 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
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 더불어 이것의 근거 협약인 난민 지위
에 관한 협약 제22조(공공교육에서도 어떠한 형태의 교육차별이
난민에게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권리 협약

제28조와 제29조

제28조는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에 근거한 교육권을 밝
히고 있으며, 제29조는 교육목표로서 인권교육을 다음
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1) 어린이·청소년의 인격, 자양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개발

2)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3)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헌 거주

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적 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4) 어린이·청소년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 평등,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5)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UN의 정의에 따르면 '인권교육'이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인간의 인성과 그 고유한 존엄성의 완전한 개발, 모든 국가·민족·원주민 간의 그리고 인종·국가·민족·종교·언어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별 평등과 그리고 우호의 증진, 자유로운 사회에 모든 인간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촉진과 같은 방향의 태도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알리는 것을 통해 보편적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보급·확산하는 교육적 노력이다. 이것은 인권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한 사회 구성원의 가치와 태도,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적극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차원의 학습기법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인권을 향한 교육적 노력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교 및 직업적이고 전문적 훈련 등의 공식적 부분에서뿐 아니라, 공공부문, 기업, 시민사회제도, 가족, 매스 미디어 등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권교육은 학습하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인권교육을 통해 평화적 인권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렵고 추상적인 지식교육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인권침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상황적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더 고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 인권교육의 환경

- 1. 학교 인권교육의 현재적 조건과 가능성
- 2. 학교 인권교육의 기본 방향
- 3. 인권교육의 교수-학습 원리 ◀



전 사회적으로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현장에도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현재의 조건들을 검토하고 그 가능성을 찾아봄으로써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학교 인권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수-학습 원리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학교 인권교육의 현재적 조건과 가능성 ■■■■■

가. 교육 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교육 환경은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데 부족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학교 인권교육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 나아가 지역 환경은 인권교육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인권적인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 인권교육의 일부분이며 그런 환경

이 또한 인권교육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환경들의 실패와 인권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1. 물리적 환경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인권 교육을 위해 학교의 물리적인 교육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어왔다. 그러나 시설 낙후, 공사, 학교 주변의 도로 사정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 급식 문제, 좁은 운동장과 부족한 체육 및 놀이시설, 교과 외 활동을 위한 부속시설의 부족, 장애 학생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학교 건물 구조, 과밀학급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장애가 되며 인권교육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과밀학급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체벌의 관계는 인권의 차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얼마 전, 학생들을 엄격하게 다룰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학교교육이 실패하고 있다는 논리에 편승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권리를 제한' 하는 체벌 규정을 만든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기본권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더라면 체벌 규정을 만드는 대신 체벌이 없어도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했을 것이다. 학급 당 학생수를 줄여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방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적 대안일 것이다. 물론 오랜 시간과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학생들의 인권 보장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2. 교육문화적 환경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적 풍토는 자연스럽게 인권교육을 촉진한다. 학교에서 알게 된 인권과 관련된 가치와 태도가 학생들의 생활공간인 학교와 가정, 지역에서 늘 실현되고 북돋아진다면 인권교육의 효과는 그만큼 클 것이다. 최근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권을 존중하려는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인권교육을 위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지나친 경쟁을 강요하고, 남성 우월적이며, 지역과 학력 등으로 편을 가르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집단 따돌림, 지나친 입시경쟁, 엄격한 선후배 관계, 갈등의 폭력적 해결, 서로에 대한 무관심 등 학교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소중하며, 모든 생명과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평화와 연대를 추구하는 인권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거나 인권교육에 대한 신뢰를 버릴 수가 있다.

또한 인권을 강조하면 자칫 학생들을 더욱 버릇없게 만들고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치면 교권이 위태로워진다고 인식되는 분위기도 인권 교육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이런 문화를 바꾸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교사의 권리도 존중받는다. 교사 자신의 자각에서 출발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기존의 학교 문화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방법을 모색하게 해주는 교육활동이다.

3. 지역사회의 환경 및 대중매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시설의 부족, 학교 주변의 안전문제 등은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주변의 폭력, 유해업소, 갖가지 공해 문제 등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거나 비판적 시각 없이 사회적 편견을 유포하는 대중매체의 문제도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며 인권교육의 토대를 만드는 과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동시에 인권교육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유해업소 추방을 위한 캠페인, 지역에 부족한 교육·문화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시설의 도움을 받아 인권교육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인권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각과 안목을 갖추어서 대중매체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부터 그들의 인권이 실현되는 과정을 경험해야만 인권교육은 생명력을 갖는다.

나. 인권교육은 누가 담당하는가?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또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주장은 공허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하려고 할 때 주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육행정이 인권교육의 중요한 주체이다. 학생들은 인권교육을 요청하고 기획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가 된다. 학생은 교사와 인권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인권적인 태도와 기능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학생들 자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긴밀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1) 교사

인권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데 교사보다 중요한 학습자료는 없다. '우리 선생님은 항상 우리들을 존중하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어'라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좋은 인권교육은 없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와 과밀학급,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라는 외부적인 상황과 폭력적인 언어 사용과 체벌, 소지품 검사와 같은 사생활 침해, 권위주의적 교육관,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등 교사들의 내적인 문제들은 학교 인권교육을 어렵게 한다.

인권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자치 실현과 비민주적이며 비인권적인 학칙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 두발 자율화 문제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인권교육을 연구하는 자발적인 교사모임이 생겨나고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교육에 관한 캠프나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은 생활 주변에서 인권교육의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학교 인권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교사들이 지금보다 학생들의 인권과 인권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성과로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사 자신 또한 교수방법에서 비인권적인 측면은 없는지 성찰하고 인권적 마인드와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다.

2) 학부모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못지않게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소한 체벌이나 언어 폭력에서부터 아동학대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인 인권침해가 가정 내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나치게 입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대학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입시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인권교육이냐' 혹은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버릇이 없다는데 인권이다, 권리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여 시작부터 인권교육을 어렵게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실현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 밖의 생활공간으로 확장하고 어디서나 인권적인 마인드로 생활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자녀들을 존엄한 인격체

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부모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인권교육 속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겠다.

학교경영자와 교육행정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문화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경영자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교육행정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를 위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비록 학교와 교육행정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풍토가 확산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경영 및 행정방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으며 이는 인권교육에 장애가 되고 있다.

최근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일부 교육청에서 인권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인권교육이 중요하다는 분위기에 편성해 일단 결과물을 내보자는 성과주의적 발상으로 인권교육에 접근하는 것이다. 검증되지도 않은 교재를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고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학교를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형식적인 성과만을 보여주는 방식이 된다면 현장에서는 인권교육을 또 다른 업무나 늘어난 교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자료의 제작 및 소개, 학교 경영자와 교육행정가를 위한 연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사 연수 및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나아가 지역 및 전국 단위의 다양한 인권교육 사례들을 축적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또는 인권교육 센터의 구성 등이 필요하며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 인권교육의 현실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인권교육이 더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들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유엔의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사 연수가 요구된다. 인권교육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면 인권교육이 확산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 인권교육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재 개발과 보급,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인권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 교사들이 이런 연구와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교원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다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비교사들이 인권에 대한 건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인권교육이란 구체적인 교육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인권교육의 확산과 정착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강사진 등 제도적, 인적, 재정적 지원과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인권단체 및 지역단체와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다. 최근 인권단체나 교사모임, 지역단체에서 축적한 인권교육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들이 있다. 이 성과들이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권교육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인권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어떤 문제들이 다루어져야 하는지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고, 인권단체 및 지역단체의 현장은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그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학교 인권교육의 기본 방향 ■■■

이제 겨우 걸음마를 내딛으려는 인권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까? 이것은 인권교육이 우리 학교 현장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행 교육과정에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것이다.

가. 인권 문화의 정착과 확산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가치롭게 여기고 이를 지키고 실현하는 문화를 정착, 확산시키는 것이다. 학교 인권교육 또한 이런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에서 출발하더라도 끊임없이 학생들의 삶의 공간인 가정과 지역으로 가지를 뻗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권이 신장되는 풍토와 문화를 구체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만들어내야 하며, 학부모와 학교는 인권적인 가정 및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학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 인권교육이 지역 사회단체 및 복지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 인권교육은 학교에서 인권 문화가 싹을 틔우고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사회 전반에 인권 문화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나.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운영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면화 할 수 있는 태도와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흔히 있기 마련인 지식과 행위 사이의 단절이 심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인권선언문의 각 조항들을 줄줄이 암기한다고 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일회적인 강연이나 체험활동만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모든 교과에 걸쳐 인권적인 요소들이 통합되며 생활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 학습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권과 관련된 통계자료나 그래프 등은 수학과 과학에서, 문학작품은 인종 및 여성차별, 전쟁, 기아 등 인권과 관련된 주제들을 제공하고 생각해볼 수 있게 하며, 역사와 사회는 인권을 신장시킨 여러 인물과 운동, 국제적인 인권 기준들의 역사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생활 지도나 학급운영의 측면에서도 학급 행사나 규칙, 갈등 해결 방법 등에 인권교육을 고려할 수 있다.

다.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교육활동

인권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은 확고부동하게 정형화된 그 무엇이 아니다. 인권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어 왔으며 그 경계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에 걸쳐 있다. 또한 인권은 머나먼 이상이 아니며 학생들이 생활 장면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 있다. 이런 문제들을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다루고 인권이 삶의 기준과 가치로 받아들여질 때, 학생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현실의 인권문제들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수동적인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다. 인권교육은 학생들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 인권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만 가능하다. 인권교육의 목적 중 하나가 인권을 실현하는 것인 한 인권교육은 참여적이며 실천적이어야 한다. 이상은 머리로 그릴 수 있지만 현실은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3. 인권교육의 교수·학습 원리 ■■■

인권교육은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교육할 수 없다. 흔히 드는 예로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권리'를 배우는 시간에 교사가 "야! 너 조용히 안 해!"라고 말하면서 활동을 시작한다면 학생들은 이 수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교수·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 고려되고 적용되어야 할 원리들이 있다. 이 원리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인권교육의 출발점은 신뢰이다. 먼저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활동 자체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된다. 교사가 학생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데 학생들에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게 된다.

나. 학습 소재는 학생들 자신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이다

인권교육의 소재는 학생들과 그들이 접하는 세계이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다루어질 때 학생들은 인권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고리타분한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고 비로소 학습에 흥미와 동기가 생긴다.

다. 탐구공동체(Community of Inquiry)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교육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무엇이 문제가 되며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토론이 요구된다. 이런 탐구과정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과에 자긍심을 갖도록 이끌게 된다.

라. 경험적이며 활동적이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해보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활동을 기초로 한다.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은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문제들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활동과정에서 사전 지식과 새로운 지식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면 학생들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모색은 단지 사고과정뿐만 아니라 무엇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혹은 글을 쓰는 활동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된다. 인권교육은 이런 활동 기회들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마. 현장체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교육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현장 중심적이라는 점이다. 생활 장면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는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직접 장애우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거나, 여러 인권 옹호 단체들을 방문하여 해결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활동은 인권교육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

바. 문제해결 능력과 의지를 복돋아주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다. 학생들이 접하는 크고 작은 갈등상황에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원대한 해결전략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단기적 해결과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고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 능력과 의지를 갖게 된다.

사. 교실 안과 밖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를 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 세계로 인식을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의 인권문제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시야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나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과정이다. 또한 인권교육은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인권교육의 방법은 이상의 원리들에 근거하여 고안되어야 하며, 이 원리들이 녹아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살아 있는 인권교육이 될 것이다.

IV

인권교육의 내용

- | | | |
|---------------------------|------------------------------|---------------------|
| 1. 국가권력과 인권 | 6. 자유로운 자기표현 | 11.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 2. 권리와 의무 | 7. 공동체와 민주적 참여 | 12. 노동의 권리 |
| 3. 정의와 평등 | 8. 문화적 권리와 관용 | 13. 이주의 자유와 난민의 권리 |
| 4. 차이와 차별 | 9. 성차별로부터의 자유 | 14. 평화와 비폭력적 갈등해결 |
| 5.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10. 신체적·정신적 차별로부터의 자유-장애인 인권 | 15. 국제연대와 인권 |



1. 국가권력과 인권 ■■■■■

가. 목적

국가는 국민의 제반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공공의 의무를 진 국민을 위한 기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기구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만다.

더 나아가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권 등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즉,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권리, 청구권적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해 국가기관의 불법적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책임을 짐과 동시에, 일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등 복지권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행위로서 증진될 수 있

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할 책임과 적극 개입해야 할 책임을 동시에 지는 것이다.

본 단원의 목적은 첫째, 국가의 권한과 국민 개인의 인권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국가기구가 인권침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둘째, 우리나라의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과제를 인식하고, 셋째, 인권신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탐색해봄으로써 인권적 관점에서 국가기구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발전시킨다.

나. 내용

인권침해 역사 속에서 국가는 어떻게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나?

국가기관에 의한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에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마련이다. 일단 경찰차를 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생각하며 조심하고 기분 나쁜 경험들만 떠올린다. 하지만 국가는 사회적 질서유지와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일정하게 인신을 구속하는 기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통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든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 선입관을 객관적 이해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인류 역사를 회고해보면 근대국가가 수립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국가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기구였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 근대국가의 수립 과정에서 근대 시민계급이 형성된 이후 국가는 차차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자유, 평등, 박애는 근대 시민사회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했던 인류의 이상이며 이것을 민주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삼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근대적 민주국가의 수립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고 수많은 민중들이 혁명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또한 국가간의 충돌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낳았고 그 결과 인민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혔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더 이상의 유혈충돌을 막기 위해 국제연합을 창설하였고 개별 국가들은 국민의 인권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국가간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권적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의 진정한 권위는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국가는 인권을 어떻게 침해해왔는가?

해방 이후 권위적인 정권하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은 국가발전을 위해 유보되어 왔으며, 남북 분단으로 인한 사상통제는 인권을 억압하는 결정적인 사회적 제약으로 작동하여 왔다. 근래에 들어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 폭력, 도·감청 등 억압적 인권탄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나 검찰 등 과거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기관으로 여겨졌던 법집행 기관에서 인권에 대한 고려를 우선 순위로 상정해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검찰에 의한 고문치사사건 및 그 후속 조치로서 나온 검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부의 인권침해적 요소들은 아직 우리나라의 국가에 의한 인권보호의 현실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만 보더라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임을 보여준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보면, 전체 진정건수 중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가장 많고(30.9%), 그 다음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23.3%), 그리고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8.3%)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인권침해의 내용은 대부분 수사과정과 구금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인격모독, 불공정한 수사 등이다.

UN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개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세계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인권보장의 현주소를 알아보자.

자유권 규약과 관련하여 1999년 우리나라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첫째**, 국가보안법이 분단의 법적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여러 권리에 반하여 인신구속의 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과 관련하여 '반국가적'이라고 규정한 행위의 범위가 비합리적으로 넓어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여성차별적인 법과 관습에 대하여, 특히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종속적인 역할 및 고용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을 우려하고 있으며, **넷째**, 구금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섯째**, 사상전향제도가 폐지된 것은 환영하나 이것이 준법서약으로 대체되어, 준법서약서가 국가보안법위반 죄수의 석방조건으로 되고 있는 관행은 폐지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여섯째**, 도청장치의 광범위한 사용과 개인의 사적 정보 관리 시스템의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곱째**, 전교조 등 공공부문의 노조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아직도 공공부문에 있어 단결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집회결사의 권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회구성원, 예를 들어 의사나 사회운동가들에게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기의 지적사항들은 국내의 인권문화 및 관습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앞서 있는 감이 있기는 하

지만,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위해 하고 있으며, 인권보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보인다.

아울러 사회권 규약과 관련하여 UN 사회권 위원회가 우리나라 정부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해고와 감원, 고용안전성 퇴보, 수입불균등 증가, 결혼가정 증가, 많은 사람들의 주변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둘째**, 급속한 경제발전이 모든 사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어떤 권리 혹은 어떤 집단의 권리가 희생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높은 산업재해의 문제점, **넷째**, 기초생활법 보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장애인 의무고용 쿼터제의 불이행을 지적하였으며, **다섯째**,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미흡과 임시거주지 제공을 이행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여섯째**, 사설 의료기관의 비율이 높아 주변화된 집단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곱째**, 중등교육의 의무교육제 도입, 공교육 제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회에 차별없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교육제도 강화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권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필수교육과목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회권 규약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70년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일변도로 인한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이와 연장선에서 맞닥드릴수 밖에 없었던 90년대 말의 IMF가 가져온 대량의 실업과 고용불안정 등이다. 이로 인하여 기초생활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짐으로써, 오늘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 한국의 국가는 인권증진을 위해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 무엇보다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국가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적 국가기구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오랜 정치적 관행으로 인해 힘, 권력, 돈 등이 제도적 절차보다 우위에 서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쁜 문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힘으로 상징되는 국가권력을 국민을 위해 분산시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방분권화와 지방참여는 중앙집중적 권력을 아래로 분산하고 이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남북 분단과 미국 주도의 세계화로 인해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골이 여전히 너무나 깊다. 무엇보다 한국전쟁의 후유증과 국내정치의 비민주성은 이념적 적대화를 낳았고 이로 인해 사상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아왔다. 현재 남북간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정부가 노력하여 이룬 성과인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선언을 국민적 합의문으로 승격하여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틀로 삼

아야 할 것이다.

셋째, 비민주적 정권 하에서 자행되었던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의 인권유린은 마땅히 밝혀져야 하고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줌과 동시에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이러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반 관련 제도의 확립(재발 방지 교육을 포함하여)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넷째, 장애인 및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에 대한 특별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선언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어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적 자존감을 가지고 일상적 삶을 영위하도록 제도 개선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여건과 문화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국민복지 향상을 통해 개인이 사회적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각종 사회적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세계화의 단계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빈민들의 삶의 조건은 더욱더 황폐화되었다.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과 함께 인간적 권리들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다. 활동

1) 3세대 국가인식 비교

할머니와 할아버지 세대가 느끼는 국가, 부모 세대가 느끼는 국가 그리고 현세대가 느끼는 국가를 이야기를 통해 비교해본다.

— 이야기 하고 듣기, 공감하기

2) 나는 국가권력 앞에서 한 없이 작아요!

'신문을 활용한 교육' (Newspaper in Education: NIE)을 통해 국가권력의 개인 인권침해 사례를 모으고 이를 중심으로 모둠을 나누어 역할극으로 인권침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해 본다.

— 경찰 및 군대 문제를 중심으로

3) 보건 복지부, 복지재단 방문하기

국가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사회권적 인권의식)를 현장견학을 통해 알아본다.

— 현장학습

4) 저기 경찰이 온다!

아이들이 울때 엄마가 “저기 경찰 온다” 하면 울음을 그치는 부정적 대화법을 찾아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우리도 알고 있는 경찰도우미” 사례집을 만들어보도록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즉 경찰이 하는 일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 조사, 현장학습

라. 평가

① 개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는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국가권력과 인권에 대한 교육은 나에게 유익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③ 나는 앞으로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참하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2. 권리와 의무 ■■■■

가. 목적

권리와 의무의 상호의존성은 인권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본원리 중 하나이다. 이 상호의존성의 원리는 우리 개개인들이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인권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서의 인간은 추상적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 나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의존하여 실행된다.

인권은 그저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속에서 실행될 때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는 인권의 실현을 위하여 나 역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줄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하면 안 그래도 자기만 아는 아이들이 자기 권리만을 내세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는 바로, 인권의 권리와 의무간의 상호의존성의 원리를 무시한 채 인권교육을 권리교육으로 오인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인권의 상호의존적 성격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만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권리와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의무의 개념이 생겨난다. 그런데 인권에서 말하는 의무란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본 단원의 목적은 첫째,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둘째, 자기 인권의 소중함과 더불어 타인의 권리의 존중,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내용

1) 우리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세계인권선언은 첫머리에서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고 하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동등하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

고 있다.

인권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염원과 정의, 평등을 추구한 결실로 세계는 인권에 관한 많은 조약과 협약을 갖게 되었고,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적·정치적 권리로써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정권, 청구권, 재산권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즉 평등권 등이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로써 일하고 휴식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사회복지를 추구할 기본적 복지권,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선택을 보장할 교육권 및 자기 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생활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등이 있다.

셋째, 1990년대 이후 전 지구적 생태계를 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나친 개발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권이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인권은 사회적 출신, 인종, 성, 나이,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국가는 법으로서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의 사회적 의무는 무엇인가?

한 개인은 사회 안에서 홀로 살아갈 수는 없다. 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 이 때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존중받는 동시에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가정 구성원으로서,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세계시민으로서 각기 권리와 책임이 있다. 가정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독립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 있게 양육하며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필요한 후원을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게 된다. 학교 구성원으로서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학교 안에서 다양한 개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 이후의 단계에서는 요구되는 학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칙을 준수하고 교육과정을 적절히 이수할 책임이 있다. 지역사회 및 국가 그리고 지구촌에서도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조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선거

참여를 통한 시민적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등을 다하여야 한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듯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은 부당한 강제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사회적 의무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권력기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경우에는 의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자유나 인권은 제한되고 국민적 의무만 강조되면서 그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지면 엄청난 시민권적 저항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는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것들이어야 한다.

3)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상호존중

세계인권선언에 천명되고 각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된 개인의 권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상호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칫 방종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개인적 자유를 요구하며 ‘나는 ... 할 권리가 있다’ 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만큼 타인들을 존중하고 남들도 나와 똑같은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의 인권만 소중하고 남의 인권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일 뿐이지 결코 상호존중 정신에 근거한 인권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인권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모두가 존중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항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안녕을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가치는 형제애적 연대성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지구공동체를 이루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감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가치가 바로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애로써 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과 평등성 그리고 양도불가능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에서는 자기 권리만이 아니라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다 함께 지켜주는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연대성이 중요하다.

다. 활동

1) 교육에서 권리와 의무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따라 국가의 의무교육권, 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 그리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주체들의 상호 역할을 권리와 의무로 표기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할 일을 구분한다.

2) 나는 이러한 교육적 권리가 있어요!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토대로 소집단 모둠을 나누어 프로젝트 학습으로서 ‘나는 이러한 교육적 권리가 있어요’를 역할놀이로 하게 한다.

3) ‘권리-의무’ 짝짓기

두 모둠으로 나누어 한 모둠의 사람이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요’ 하면 다른 모둠의 사람이 ‘당신에겐 이런 의무가 있어요’ 하고 말한다. 예를 들면 ‘나는 말할 권리가 있어요’ 하면 ‘당신은 남이 말할 때 그 이야기에 귀기울여 들어줄 의무가 있어요’ 하고 응대한다.

그림으로 ‘권리-책임’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깨끗한 교실환경에서 수업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 그 옆에 교실을 더럽히지 않고 청소하는 그림을 그려넣는다.

4) 소수자의 권리 찾기

소수자의 권리와 이를 보호해줄 사회적 의무, 장애인의 이동권,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보고 소그룹 토의를 한다.

— NIE 교육, 혹은 TV 다큐멘터리 활용

5) 청소년의 권리찾기

새 청소년헌장에 나타난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알게 한다.

— 인터넷 활용교육

라. 평가

① 인권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한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학습은 인권교육에서 중요하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③ 앞으로 나의 권리만이 아니라 남, 특히 어려운 사람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3. 정의와 평등 ■■■

가. 목적

사전적 의미로 정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라고 정의되며, 평등이란 '치우침이 없이 모두가 한결같음' 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치우침이 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란 무엇인가?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이를 보장하는가? 역사적으로 자유, 정의, 평등, 박애 등의 지고한 가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고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숭고한 민주주의의 가치로서 존중하고 학습한다. 인권에서 개인적 자유는 보편적 수준에서의 개인적 권리로서 명기되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적 존엄성을 손상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의 정의와 평등은 구체적인 표현 없이 당연히 전제되는 가치와 원칙으로서만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정의는 사법적 정의를 말한다. 만일 자신이 억울하게 처우받았다면

호소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정부기구가 바로 사법부가 된다. 그래서 법무부를 영어로 '법과 정의의 부(Dept. of Law and Justice)' 라고 한다. 헌법은 국가적 수준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며, 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6·7·8 조는 법에 의한 보호를 말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사회적 정의로서 분배적 정의를 말한다.

사회적 정의는 평등하게 부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평등은 세계인권선언 제2조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정의와 평등이다.

보통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존중되나 정의와 평등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다. 그러다 보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의 책임이 일부 층에게만 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정의와 평등은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강조되어야 하는 원칙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이 단원의 목적은 첫째, 정의와 평등을 자유와 더불어 올바르게 균형 있게 학습하며, 둘째,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나갈 전망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 내용

1) 정의와 평등사상은 어떻게 발전하였나?

대체로 우리가 사용하는 정의와 평등에 근거한 인권의 개념은 서구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유래한 것이나 서구에서조차 그것은 정의와 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피의 대가이다.



그 역사적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절대왕권을 제한한 최초의 문서이다. 모든 죄인들은 왕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재판받아야 하고, 조세 역시 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왕 자신이 법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이념을 천명했다.

○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법에 의해 재판받고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처벌을 금한다는 민주주의적 문서이다.

○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

영국의 식민통치를 거부하며,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하여 미국인의 생명권, 재산권을 주장하고, 성문법에 근거한 민주주의 이념을 천명했다.

○ 1789년 프랑스 혁명

자유, 평등, 박애, 정의가 생명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으로 표명되었지만 아직 여성과 하위 신분 계층에게까지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일군 서구세계가 식민지에서 자행한 엄청난 인권유린과 민족주의의 대립은 결국 1,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을 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중들이 대량으로 학살되었다. 이 결과 1945년 개인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을 갖고 국제연합이 결성되었고 1948년 이러한 세계인의 이상을 구체화하여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것이다. 특정 인간에 의해 다수의 인간이 부정되는 정의와 평등의 실종 자체가 인권유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역사는 말해준다.

2) 한국에도 정의와 평등을 위해 투쟁한 역사가 있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 일제 식민통치기 이전까지 봉건적 왕정체제였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라든가 정의,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개념은 사회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독립협회나 개화사상가들에 의해 근대화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역사적 과정에서 서구적 개념인 자유, 평등, 인권 등 민권중심사상이 소개되고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제의 침탈에 저항하면서 국민주권에 대한 인식이 절박하게 제기되었고 그것은 민중들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 형성된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운동 진영에서는 특히 정의와 평등을 민족자결만큼이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민족해방운동의 투쟁목표로 설정하였다. 1927년에 설립한 신간회운동이나 1930년대 무장항일운동단체였던 광복군의 강령을 보면 정의, 평등, 민족자결이 중요한 민족적 전제임을 밝히고 있다.

한민족의 최대 수난이었던 6.25 전쟁과 뒤 이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극심한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 한동안 정의, 평등, 분배적 정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군부독재 정권 하에서 전개되었던 민주화운동은 당연히 민중의 생존권, 사회적 정의, 자유로운 시민적 권리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구

속되어 고문당하고 사형당하는 등 정치적 박해가 가해졌으나 시민들의 독재권력에 대한 불복종 운동과 인권운동은 한국을 민주주의국가로 세우는 밑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인권과 정의, 자유 그리고 평등은 수많은 이들의 정치적 희생 위에서 주어진 것이다.

3) 정의와 평등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은?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정의와 평등을 법적 장치로서 실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제6조 :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 :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8조 : 모든 인간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청원할 수 있는 제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정의롭고 평등하게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고 법을 집행하여야 할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헌법은 누구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회적 정의의 상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헌법과 실재가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법 집행이 사회적 지배층에게는 유리하고 가진 것이 없는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지나치게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권운동이 여전히 절실하다. 또한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 무국적자들, 가난한 장기치료 환자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특정층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는 구호는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빈부격차가 지나치게 심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기회가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지역출신이나 학맥이 공정한 사회적 질서를 왜곡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정의와 평등에 대한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노력을 다 함께 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그것을 가장 평화적이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다.

다. 활동

1) 자신이 알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엮고 정의의 개념을 다 함께 세운다.

— 사례연구, 이야기 듣기, 역할놀이

2) 가공식품의 두 얼굴 그리기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회사 배스킨라빈스 그룹의 2세가 아버지 사업을 잇기를 포기하고 가공식품의 폐해를 알리며 대안적 식품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세계시장 공략이 전 세계인의 기형적인 식생활을 낳게 할 것이고, 그 결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어렵다는 재벌 2세의 환경운동은 정의와 평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준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의 입장을 항변하게 한다.

3) 격려와 부정(warming up or cooling out)?

학교에서 공정해야 할 교사가 똑같이 잘못된 두 학생이 있을 경우 어느 학생에게는 “너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다. 앞으로 잘 해”하고 격려(warming up)해주는 반면 다른 학생에게는 “넌 맨날 그러냐, 너에겐 희망이 없어”하고 잘라 말하여 학생의 자질을 부정(cooling out)한다. 역할놀이를 이 과정을 진행한다.

4) 교실 정의와 평등선언문

학교는 정의롭고 평등한 생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모둠별로 선언문을 만들어 발표하고 그것을 정리하여 우리반 정의와 평등 선언문 혹은 인권선언문을 만들어 행동지침으로 삼는다.

라. 평가

① 정의와 평등은 인권실현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한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



② 인권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③ 앞으로 나는 주변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꼭 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4. 차이와 차별 ■■■■■

가. 목적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어떤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에 대한 저항과 철폐운동은 인권신장을 위한 인류의 노력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사실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연적 차이이지 이것 자체가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이런 차이들—특히 인종, 종교, 여성, 민족, 정치적 차이 등이 서로간에 벽을 만들고 적대세력을 낳아 크고 작은 분쟁들을 일으키고 있다.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차이들이 차별요인으로 작용하여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차별이 왜 일어나며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인권 상황과 미래 사회의 인권 상황을 깊이 성찰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첫째, 차별은 왜 일어나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며, 둘째,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떻게 차별을 극복하여야 하는지를 탐구하며, 셋째, 우리 사회의 차별구조를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복돋운다.

나. 내용

1) 왜 차이가 차별을 낳는가?

차별(discrimination)은 인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인권은 역사적으로 모든 차별주의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탄생했고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은 차별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별이란 어떤 이유에서든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말한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차별과 차별주의가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 혹은 무의식에 깊숙이 뿌리박힌 편견과, 차별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시키는 권력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차별은 보통 자연적 차이에 인위적인 인식이 가해져서 생겨나는데, 우리와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과 편견, 편가르기, 집단 정체성의 대립, 이의 귀결로서 상대방에 대한 목적적 적대화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람은 제각각 생김새나 말투, 행동, 생각 등에서 다양한 차이들을 갖고 있다. 이런 차이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성을 만들고 서로의 개성이 되어 어우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긍정하여 서로의 다름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서 관용의 가장 일차적인 단계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들을 단지 차이로서 긍정하지 않고 사회적 능력이나 윤리적 자질의 준거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런 차이들은 차별의 원인이 되고 만다. 이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을 낳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근거가 된다.

또한 차별은 항상 편가르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대방이 우리 편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거나 극단적일 경우 어떤 민족이나 인종, 종파는 인간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한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흑인은 인간이 아닌 동물로 취급되지 않았는가? 여성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것도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다. 백인 우월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우리의 지역주의는 또 어떠한가? 유태인 학살, 보스니아 내전 등에서 벌어졌던 인종 청소는 편가르기의 극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물론 차별이 이상과 같은 차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문제가 그 속 깊숙이 개입해 있다. 차별은 대부분 사회적 강자들에 의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여성차별은 남성 중심적 질서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남성들의 폭력이며, 인종 차별주의는 백인 우월주의라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폭력이다. 이런 권력의 문제는 거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폭넓게 작동하고 있다. 차별과 관련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은 이런 권력 관계의 이데올로기로 가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사회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차별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도 크든 작든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차별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최근 여성운동 진영의 꾸준한 노력으로 여러 부분에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와 권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 집단 전체가 항상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받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와 호주제 철폐를 비롯하여,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의 성폭력, 성 상품화, 고용 및 승진에서의 불평등, 임금에서의 차별, 사회적 진출의 제한, 매스미디어의 여성차별적 이미지 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여성차별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다.

둘째, 학력에 대한 차별이다. 우리 사회를 흔히 학력 사회라고 부른다. 학력이란 제도교육의 결과를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하나의 기준이다. 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노동인력의 가치를 선형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학력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이 기회의 균등이라는 원칙을 넘어서 지방대 학생들이 취업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거나 기업이나 정부의 인사가 출신대학에 따라 크게 작용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대학입학 시 지역할당제 문제나 서울대 해체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해준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족, 장애인들을 동등한 사회적 주체가 아니라 자선과 시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장애인 정책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은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 이들의 신체적, 정신능력 상의 차이를 존중하고 지원하여 이들이 올바르게 사회에 참여하여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2년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예바다 농아원 문제, 양지마을 사건과 오이도·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 및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비롯한 고용에서의 차별 등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정책적 지원 없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주노동자수가 20만 명을 넘고 있으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비단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적 멸시, 한국의 배타적인 문화와 열악한 노동환경, 비인간적 대우, 특히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인권의 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서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지역차별, 노숙자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매매춘 여성에 대한 차별, 재소자들에 대한 차별 등이 있으며, 이는 우리 시대가 다양한 차이들을 긍정하고 관용하며 차별을 낳는 권력구조를 바꾸어나감으로써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적이나 집안 배경의 차이에 의한 학교 내 차별 그리고 학교 간의 차별은 학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문화를 꽃피우는 장으로 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이다.

다. 활동

1) 나의 차별 경험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던 사례와 그 때의 느낌과 감정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까닭이 무엇인지 토론해 본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차별과 관련된 조항들을 찾아본다. 이후 과제로, 앞에서 살펴본 차별요인들 중 하나를 선택해 그와 관련된 차별사례를 모둠별로(또는 개인별로) 신문이나 텔레비전, 책 등에서 찾아 스크랩하거나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전시할 수도 있다.

—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 토론하기, 스크랩 또는 모니터링 하기

2) 차별사례 탐구하기

우리 사회 및 세계에서 일어난 또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차별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인종차별, 여성차별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하는 쪽과 당하는 쪽으로 나누어 각자의 입장에서 차별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와 차별당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 토론해본다. 또한 차별이 아주 심각해졌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상상해보게 한다. 또 그런 역사적 사례들을 찾아보게 한다.

— 찬반 토론하기, 역할극

3) 인권운동가 만들기

역사적으로 인종차별, 여성차별 등에 저항한 운동이나 인물을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 대상자들을 인권운동가로 변신시킨다.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에서 기사를 스크랩하여 차별 실태를 알아보고, 이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조사해봄으로써 새로운 인권운동 지도자를 만들어낸다.

— 조사학습, 공동탐구학습

4) 우리는 달라요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의 얼굴을 관찰하게 한 다음 특징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그린다. 말로 설명해도 되고 만화로 나타내어도 된다. 그리고 우리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떻게 서로의 장점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라. 평가

① 차이가 차별의 원인이나 결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차이와 차별 학습을 통해 차별이 인권침해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③ 이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가. 목적

생명은 인권을 말하기 위한 전제이다. 숨쉬고 살아 있을 때야 비로소 인권이라는 가치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권의 가치 중에서 생명과 신체에 관한 권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며, 생명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전쟁과 제도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언 제5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그리고 제9조에서도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특별히 ‘고문 및 그 외 잔인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984년)을 채택하여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전 세계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쟁과 테러, 기아, 아파르트헤이트, 사형제도, 대인지뢰 등이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고문, 강제구금, 노예제도, 인신매매, 전쟁사범 및 재소자에 대한 구타와 비인간적 대우 등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핵과 관련된 무기와 발전시설 등으로 인해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재앙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차원에서 생명권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세계화 과정에서 자본의 초국적 이동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제3세계의 아동들과 여성 노동자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조건에서 노동하는 현실 등은 생명권의 문제가 한 국가의 내부분제로 다뤄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이 어느 누구에게나 존중되어야 하는 인권의 가치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맥락을 심사숙고하게 함으로써 세계와 국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생명권과 신체적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의 내용 및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고 둘째,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류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알고 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북돋운다.

나. 내용

1)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반성으로 만들어졌다. 이 선언의 목적은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이념과 정책, 제도에 반대하는 것이며, 전쟁 과정에서 자행되는 모든 종류의 집단적 인간 살육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즉, 현대 인권의 출발은 전쟁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개인들이 자의적인 체포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행위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개인들이 불공정하게 자의적으로 체포되지

나 감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타인의 위협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과, 거꾸로 공권력이 남용되어 개인의 안전이 위협 당할 때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 그것이다. 국가권력의 양면성은 인권에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저항권**의 문제는 우리와 같이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역사를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감금·투옥되고 고문을 받으며 죽어갔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이 성장했을 뿐더러 국경을 넘어선 지원과 연대를 얻었던 것이다.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수용자라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극한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의 생명권을 빼앗고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은 그 자체로서 존엄하게 대우받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크고 작은 어떠한 형태의 처벌이나 폭력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4 무엇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가?

세계대전과 같은 전 지구적 전쟁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민족·종교·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쟁은 전투에 참가하는 군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 지역의 아동과 여성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 죽음과 공포, 성폭력, 기아라는 치명적인 상처가 그것들이다. 전쟁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이들 여성과 아동들이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기아, 질병, 강제노동, 아동노동등도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제3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하루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일하는 노동자, 아동, 여성들도 많다. 또한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에 따른 전쟁 위협, 핵과 화석 연료(석탄, 석유 등) 남용에 따른 전 지구적 환경문제 등으로 인류 전체의 자멸이 일상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오늘날 생명권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전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

신체적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고문, 강제구금, 노예제도, 인신매매, 군인이나 재소자에 대한 구타 및 비인간적 대우 등이 있으며 일상적인 가정폭력, 아동학대나 청소년폭력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특히 고문은 국가권력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까지도 사용하여왔으며, 고문을 행할 권리가 국가에게 당연히 있다는 인식을 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고문 금지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전체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인권 중 하나이다. 이는 인권이 어떻게 국가의 권

력을 정의롭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② 우리 사회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물리적인 폭력이 크게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파업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군대 및 수감시설에서 일어나는 구타와 비인간적 대우 등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또한 사회전반의 안전 불감파와 관련 기관의 안이한 행정조치 등으로 각종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설안전 미비로 인한 사고, 예를 들어 대구 도시가스 폭발, 씨랜드 사건, 인천 호프집 화재 등을 비롯하여 각종 안전 사고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죽어가고 있으며, 세계 1위의 교통사고 발생국가라는 실정을 보면, 우리의 생명권은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생명권과 신체적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의 위협은 일상생활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폭력의 형태로 공공연하게 일어난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관련 상담건수는 2002년에 39,627건으로 지난 1997년(12,358건)의 3.2배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추행은 10,599건으로 26.7%에 달하고, 강간이 전체의 31.3%인 12,3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가정폭력상담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체 상담실적은 114,612건으로 지난 1998년(41,497건)의 2.8배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폭력이 전체의 58.8%인 67,436건에 달했고 정서적 폭력(19,122건)과 경제적 학대(7,124건)가 뒤를 이었다.

가정 및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나 체벌의 문제도 있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도에는 각종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건수는 4105건이며 그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음성화된 아동학대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한다면 그 정도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정서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며 권위적인 부모의식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학교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교사들의 학생체벌, 학생들간의 폭력 및 집단구타, 왕따와 같은 집단 따돌림 등은 법정다툼에까지 이르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과 학교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도청이나 감청, 얼마 전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스토키 문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또 다른 정신적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이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다. 활동

1) 생명의 소중함

관련 비디오를 시청하고 생명은 왜 소중한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토론한다.

— 비디오 보기, 토론하기

2) 모의재판

생명권과 관련해서 사형제도와 같이 찬반토론이 가능한 주제를 선택해 모의국회나 모의재판 등을 해본다.

— 모의국회나 재판, 찬반토론하기

3) 비폭력선언문

학급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의 사례들을 찾아보고 이런 폭력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토론해보고 비폭력선언문을 만들고 이와 관련된 캠페인이나 퍼포먼스 등을 해본다.

— 브레인스토밍, 선언문 쓰기, 캠페인 하기 등

라. 평가

① 생명권과 신체적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이 활동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③ 이 활동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6. 자유로운 자기 표현 ■■■

가. 목적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를 둔 정치형태를 갖추고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 혹은 집단의 사상과 양심,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권리를 이미 그 속에 담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각종 인권선언이나 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구두, 서면, 인쇄 및 예술의 형태 등의 수단에 제한을 받지 않고 누릴 수 있으며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관습과 독재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문화적·정치적 상황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제약해왔다.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검열, 사상공방적 용공시비, 예술에서의 외설시비 등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검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실로 다양하다.

비록 우리 사회 분위기는 예전에 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와 통로가 다양해졌고 넓어졌지만 사회적 약자의 자기주장과 표현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기표현은 기성사회의 문화적 권위에 여전히 억눌려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와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사람마다 종교, 신념, 생각과 의견이 다르며 이를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둘째**, 이것이 부당하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찾아봄으로써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의견과 느낌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갖도록 한다.

나. 내용

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어떤 관계인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이나 종교에 관한 의견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상이나 종교가 집단이나 국가 구성원 다수의 것과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개인의 사상이나 종교, 생각과 의견 등은 다수와 다르다 할지라도 차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갖는 의미이다.

그런데 개인의 사상, 양심, 종교가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표현될 수 없다면 아마도 그 가치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수단에 의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대중매체나 다른 수단을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이나 정보를 표현하고 배포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사상과 양심, 종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어떤 의견이나 사상에 반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부당한 정치에 대한 저항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권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찾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한 권리를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은 여러 국가의 사례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 권리가 극히 제한된다면 그런 사회는 변화에 대처할 포용력과 생명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2)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꾸준히 신장되어왔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는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 출판기술의 발달 등을 촉진시켰으며 그와 함께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명목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인권 혹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적절히 제한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다.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권리의 제한을 두고 각 국가, 사회, 집단들 간에 윤리적 가치기준과 법률 해석의 차이

에 따른 시비가 생겨나고, 그러한 시비를 조정하는 과정은 각 주체들의 권력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분단 상황을 이유로 특정한 사상과 정치적 견해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거나 지배적인 윤리관을 잣대로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한 언론매체가 재벌 기업과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표현의 기회마저 제한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1999년 5월 집회 및 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집회의 방법과 장소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 못지않게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등의 정신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공간을 열어놓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

이 외에도 최근 대체병역 문제,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문제, 청소년들의 집회 참여제한의 문제 등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 쟁점이다.

다. 활동

1)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물건, 사람, 동물 등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서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자신이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본다. 이런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차이가 있음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다.

— 글이나 그림 그리기, 토론하기

2) 말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 혹은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서 교사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말도 해서는 안 되며 글로 쓸 수도 없고 단지 몸동작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한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한다. 만약 우리 사회나 학교가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느낌일지,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고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한다면 어떨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토론해본다.

— 토론하기

3) 내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생활 주변이나 우리 사회에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조사해본다.

사건의 개요, 침해한 쪽의 이유, 침해당한 쪽이 저항한 이유, 어느 쪽의 입장이 정당한지, 또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하면 달라졌을지 등의 항목을 정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역할극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조사활동, 역할극

라. 평가

① 이 활동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



②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가치가 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



③ 이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



7. 공동체와 민주적 참여 ■■■■

가. 목적

인권과 민주주의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도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권을 올바르게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치원리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형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모든 공동체의 운영 원리이기도 하다. 국가와 시민, 정부와 국민, 다양한 신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이자 타인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공동체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포함한다.

민주적인 삶의 태도와 능력은 인권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이며, 이것을 배우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권교육은 어느 누구든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공동체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며, 민주적인 생활을 규제하는 모든 제도와 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이해하고 둘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누구든지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참여하여 공동으로 기획하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다.

나. 내용

1)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인간은 크든 작든 집단을 이루며 살아간다. 또한 한 개인은 다양한 집단에 귀속된다. 가족, 이웃, 학교, 직장, 동호회, 군대, 지역, 국가 등 자의든 타의든 집단에 속한 개인은 그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규칙, 운영,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결정은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를 정하는 개인적인 결정과는 달리 집단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단적 의사결정이라고 부른다. 민주주의란 집단적 의사결정의 한 방식이다.

민주주의(Democracy)는 데모스(demos)와 크라토스(kratos)라는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은 인민의 지배와 인민에 의한 직접적, 참여적, 대의적 형태의 통치를 뜻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어떤 형태이든지 집단의 의사결정과 운영이 그 구성원들에 의해(popular control)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정과정에서 각 개인에게 동등한 권리(equality of rights)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는다. 물론 개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는 이 원칙의 전제가 된다. 민주주의는 또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어떤 집단이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실현했다거나 혹은 완전히 결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정도(定度)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적 수준의 정치형태에서 지역, 가정이라는 생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주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인가?

인권과 민주주의는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가치라는 점과 민주주의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21조에서 '인민의 의사는 통치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은 민주적인 정치형태가 인권 실현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권리라는 두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은 집단적 의사결정체에서 대중의 통제와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임의적인 체포나 구금,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떤 정치적인 토의나 행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부당한 기소, 고문과 편향된 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또한 이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과 신념이 존중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종교나 신앙, 사상을 가질 자유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 신념을 실천하고 표현할 자유를 제공한다. 만약 어떤 종교나 사상, 신념이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믿음이 되더라도 소수집단의 종교, 사상, 신념 역시 동일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다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태롭게 된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권리는 대체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과 관련이 있으며, 보건, 주택, 영양을 포함하여 사회보장, 노동의 권리, 충분한 휴식과 문화생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이런 권리들의 기초 위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어떤 사회가 너무나 빈곤해서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들에게 관심 밖의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권리가 평등하게 행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부의 불평등이 자칫 기회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권리들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3 민주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현대 사회에서 민주적인 참여는 단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의미하는 소극적인 뜻은 아니다. 본래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이러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던 사회에서는 기회균등 자

체가 중요한 목표였으나 현대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참여, 즉 밑으로부터의 균등한 실질적인 포괄적 참여(inclusive participation)를 실현하는 것이 과제로 되었다. 포괄적 참여는 지위와 신분을 떠나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결정과정에 이르기 전에 토론 및 기타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 지분을 배정하는 할당제는 포괄적 참여를 위해 가능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다.

어떤 민주주의 체제이건 근본적인 성격은 공동체의 정치적 결정에 참여한다는 관념이다. 지위, 신분을 떠나 공공의 결정은 대부분 구성원들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민주주의의 전제가 된다. 보통 이런 참여의 방식은 두 가지 경향을 띤다.

첫째, 직접민주주의 방식이다.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쟁점사항을 심의하고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그 구성원들이 직접 법률이나 규칙을 토론하고 통과시킨다.

둘째, 대의민주주의 방식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법률을 심의하고 공무를 담당할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도 국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이후 정치적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선발된 소수가 지배적 다수만을 대변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일정 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함으로써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포괄적 참여를 위해 단순히 선거와 투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견해가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 과정에 대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찾아보고 동시에 전문가적 압력단체, 시민단체에 참여하거나 공청회, 정치집회, 지역자치에 참여하여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민주적 행동이다.

다. 활동

1) 나도 참여해요

학급이나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경험을 나누어보고, 모든 구성원이 그 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따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 경험 나누기, 토론하기

2) 민주주의 역사 탐구반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 사건들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인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해본다.

— 프로젝트 학습, 조사학습, 역할극으로 재연하기

3)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대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에서 어떤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을 역할극으로 해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과 책임에 대해 토론해본다.

— 역할극, 세계인권선언문 관련 조항 찾고 토론하기

4)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프로필을 조사해서 그들의 배경을 중심으로 대표성을 구분한다. 여성 대표, 농민 대표, 노동자 대표, 장애인 대표, 기업 대표 등으로 나누어 골고루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집단의 대표성이 빠져 있는지를 모둠별로 조사한다.

— 국회 방문, 모둠토의

5) 지역공동체 방문

지역의 시민단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작은 박람회나 전시회 등을 열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해보는 경험을 갖는다.

— 브레인스토밍, 시민단체 방문하기, 전시회 열기

라. 평가

① 이 활동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② 민주주의를 위해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③ 이 활동을 통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8. 문화적 권리와 관용 ■■■■■

가. 내용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보편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간혹 인권 개념이 지나치게 서구적이고 각국의 특수한 여건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인권보다 주권을 앞세우는 국가도 있다.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가 지구상에 존재하며, 이는 문화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비인간적인 문화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의 집단적 표현이고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문화란 어느 특정층이 독점하고 있는 단일의 고급문화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언어, 자기 관습, 자기 취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자기만의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자유롭게 누릴 권리가 있다. 자신의 종교를 공표하고 실천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식민주의는 인류의 문화적 권리를 부정하였다.

지배국가가 피지배국가의 문화를 저급한 것으로 평가하고 강제로 식민종주국의 문화를 이식시킨 데에서 문화의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배국(서구) 중심의, 남성 중심의, 성인 중심의, 백인 중심의, 기독교 중심의 문화가 다양한 민족문화를 짓밟고 보편성이라는 미명 아래 문화적 착취를 자행했다.

따라서 인류는 식민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각기 서로 다른 문화적 감수성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문화를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첫째,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둘째, 문화적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며, 셋째,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이 어떻게 인류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나. 내용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사람이 갖는 문화적 권리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 ①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5조에서도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그리고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개개인이 문화를 창조하고 그것을 향유할 권리와, 국가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성과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각 개인의 창작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사상, 종교 그리고 표현의 자유 및 검열 폐지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권위주의적 정부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기본적인 문화 표현의 자유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 식민 치하에서 모국어 표현을 부당한 채 자민족의 고통에 대해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화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문화적 권리란 단지 창작과 저작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화적 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우 근본적인 주제인 것이다.

식민문화 정체성의 비문화적 대항 운동이란?

억압적인 사회문화 속에서는 대체로 주류문화만이 공식적인 문화로 인정되고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식민 치하에서는 지배국의 문화와 언어가 일방적으로 주입되었고, 많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지배권력이 인정하는 비정치적인 억압적 문화만이 공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성인들만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었고, 남성 중심의 문화가 주류문화로 지배하게 되었고,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싼 고급문화만이 문화활동으로 존중받았던 것이다. 그 외는 모두 반문화로서 주류 문화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활동은 훈련받은 소수의 전수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문화에 대한 탈정치적 태도는 식민지 모국인 서구에서도 일반적이었으며 식민지 언어나 문화

는 미개한 것으로 때로는 문화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었다. 선진 제국은 강제로 서구 식민문화와 종교를 주입하는 문화적 부정을 통하여 식민지배를 영속시키려고 하였으나 역설적으로 식민지민중들의 문화적 저항은 더욱 거세져서 결국 식민지배는 종식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서구 중심의 문화관과 문화상품은 제3세계를 다시 지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 헐리우드 영화와 코카콜라로 상징되는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문화의 보편성을 가장하는 단일문화의 세계화는 오늘날 문화상대주의에 의해 비판받고 있으며, 세계평화와 모든 민족의 문화적 권리의 존중이라는 각도에서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그런 각도에서 9.11 사건의 배경 뒤에 숨어 있는 문화적 갈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폭력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한 잠재적으로 저항적 폭력을 잉태시키는 한 문화에 의한 타문화의 부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타문화 존중과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3) 문화적 권리는 어떻게 학습될 수 있는가?

어린이·청소년 권리 협약 제29조,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문화적 다양성이 권리로서 학습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①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② 인권의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③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헌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④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관용,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⑤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제30조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정당하지 아니한다.

학교에서는 어린이·청소년 권리 협약에 따라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며 기타 미디어나 기업체 특히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기관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타

문화 이해교육에 근거한 평화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통과 정보기술의 빠른 발달로 세계인의 소통이 더 손쉬워졌다. 이러한 발전이 문화적 충돌로 귀결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구공동체 건설을 위해 문화적 권리에 대한 학습은 시급하다.

다. 활동

1) 학교에서 우리를 어리다고 무시해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미성년이라고 전제하고 그들의 문화적 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 협약을 문화적 권리에 대한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특히 제 31조의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학습시키고 그들 자신의 문화적 표현을 창조하도록 한다.

— 집단 창작(영상이나 인터넷을 통해 표현)

2) 드라마 모니터링—사투리와 지방 문화

자기가 즐겨보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투리의 종류를 알아보고 사투리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서로 이야기한다.

— 소그룹 활동

3) 세계문학은 백인문학?

교과서에 나오거나 선생님이 추천하는 세계명작의 대부분이 백인문학이고 백인 중산층 예술이라는 것을 분석하게 하고 그러한 백인 문화 이외의 대안 문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 학습

4) 단일민족은 좋은 것?

우리나라는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단일민족'이라는 오래된 교육과 믿음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역할극으로 표현해본다. 현재 자신이 볼 수 있는 외국인의 출신 나라를 세계 지도에서 찾아보며 세계 속의 한국을 실감하고 다문화적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든다.

— 역할극과 지도 찾기

라. 평가

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표현하고 고유한 종교를 지킬 문화적 권리가 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② 문화적 권리에 대한 학습을 통해 내가 보는 세계가 커졌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③ 내 주변에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력하겠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9. 성차별로부터의 자유 ■■■■

가. 목적

인권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전제와는 달리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여성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지금도 여성차별은 중요한 차별문제 중 하나이다.

유엔의 '여성차별 철폐 협약(1979)' 제1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가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성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성차별은 주로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에 대한 그릇된 신념과 편견, 고정관념 등에

서 비롯된다. 여성과 남성은 각각 고유한 특성과 능력이 있으며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이런 관념은 교육과 같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반복되며 강화된다. 설사 성별에 따른 특성과 능력이 있고 그에 적합한 사회적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제한적이거나 강요된다면 개인적인 삶의 선택과 기회는 침해되며 인권은 위태로워진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양성평등 가치를 위해 첫째, 성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일어나고 있는지 둘째, 성차별의 사회적 결과가 어떤 문제를 낳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셋째,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나. 내용

1) 성차별이란 무엇인가?

성차별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런 성차별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가장 뿌리 깊고 만연된 사회적 불의 중 하나이다. 성차별은 여성을 폄하하거나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감정적인 측면, 여성은 감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식의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인지적 측면, 여성에 대해 구체적인 차별을 행사하는 행동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

이런 성차별은 성차와 성역할에 대한 오래된 편견과 고정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여성다움, 남성다움과 같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차(gender)를 본래적인 것처럼 여겨 이에 알맞은 사회적 역할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은 아동과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신념들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교육되고 강화되어왔으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배제하고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2) 성차별 철폐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가?

근대적 인권 개념이 형성되면서 인권의 주체에 여성을 포함할 것인지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19세기 여성운동은 남녀평등을 위한 포괄적인 운동에서 출발하여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여성

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하는 운동으로 집중되었다. 이는 여성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였으나 투표권의 확대가 기대했던 만큼 여성의 권리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운동의 중요한 관심사는 산아제한 운동이었다.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출산이 노동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난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작업장 또는 군수품 공장 등에서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에게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사회적,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면서 재산권을 획득하고 자립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3년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여성 또한 남성과 같은 인권의 주체라는 점을 인정받게 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유럽에서 시작된 뉴레프트(New Left) 운동 등은 여성문제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의 길을 열었다. 그에 따라 여성문제가 시민권의 획득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전반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후 여성운동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평등한 노동조건과 임금차별을 제거할 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출산의 문제에서 여성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그것이다. 또한 소수집단의 여성들과 제3세계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여성운동 진영은 단순히 여성인권의 신장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있다. 현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철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존중되어야 한다는 양성평등의 원리를 제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3) 우리 사회 여성인권의 현주소는?

유엔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조사대상국 100개국 중 83위라는 점만으로도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가져온다는 일반적 경향과도 배치된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여성친화적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차별적인 교육,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산전산후 휴가를 90일로 하여 모자보호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겠다고 한다.

또한 공직 부문에서의 여성고용을 늘려 30% 할당제를 전 분야에서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 결과 공직자 부문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정계나 기업 혹은 정부의 상위직급 그리고 연구직 및 대학교수 등 전문직에서의 여성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다. 이는 여성차별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성차별적 노동관행은 노동조건에 반영된다. 3/4 이상의 여성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2/3가 4인 이하의 영세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10명 중 7명이 임시직 혹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용의 활성화란 명목으로 생리휴가와 야간근로 금지 규정 등 모성보호 조항들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으며 구조조정 1순위가 기혼 여성 노동자인 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여성에게 육아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육아와 가사노동의 이유로 60.3% 정도의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을 만큼 모성보호는 시급한 문제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탁아문제, 산후휴가, 가정생활 지원제도가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

이 외에도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호주제 존속여부의 문제, 직장 내 성희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성폭행과 가정폭력 등의 문제는 성차별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들이다. 여기에 덧붙여 일상적 문화를 압도하는 여성차별적인 관행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양성평등적인 문화로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서 학교와 대중매체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텔레비전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 등에서 성차별적인 표현을 없애고 양성평등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 활동

1) 여자라고 무시해요

성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신문이나 매체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학생들은 성차별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 자유롭게 말하고 공감하기, 스크랩

2) 드라마 모니터링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는 말을 찾아보고, 사회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

해 말해보고, 그런 기대가 특정한 성에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토론해본다. 이때 내가 여자 또는 남자로 태어난다고 상상해보며 이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과제로 텔레비전 드라마나 만화 등에서 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장면을 모니터링 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도 있다.

— 브레인스토밍, 토론하기, 모니터링 하기

3) 우리 사회의 성차별 지수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성차별 사례를 스크랩하거나 성차별과 관련된 주제를 잡아 프로젝트 학습을 해본다. 호주제나 사내 성희롱 문제, 가정폭력, 불평등한 여성 노동 같은 주제라면 다양한 자료와 쟁점들로 활기찬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를 탐방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인터뷰하게 할 수 있다.

— 프로젝트 학습, 현장방문 및 인터뷰

4) 세계 여성의 날

여성차별 철폐 운동과 관련된 비디오를 보고 세계 여성의 날(3.8)을 기념하고 그날 성차별 철폐를 위한 학급 선언문을 만들거나 학생회를 통해 옴부즈맨(Ombudsman)을 두어 활동할 수도 있다.

— 기념일 활동, 옴부즈맨

라. 평가

① 이 활동은 성차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매우	그런	그저	그렇지	매우
	그렇다	편이다	그렇다	않은	그렇지
				편이다	않다



② 성차별은 제도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우	그런	그저	그렇지	매우
	그렇다	편이다	그렇다	않은	그렇지
				편이다	않다



③ 이 활동을 통해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0. 신체적 · 정신적 차별로부터의 자유 – 장애인 인권 ■■■

가. 목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특히 심하다. 장애인들은 국가정책에서도 소외되어 공개적인 공간에서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선언(1975)과 같은 각종 인권 문서와 더불어 어린이 · 청소년 권리협약은 제 23조에서 “국가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 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국가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의해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한 대부분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동정, 즉 시혜의 대상이나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체계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주는 쪽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부분 함께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애인이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사회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전 생애에 걸쳐 언제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임을 알고, 둘째, 장애인을 위한 제도마련의 필요성과 장애인의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도록 한다.

나. 내용

1) 장애인도 존엄한 인격을 지닌 인간이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문제는 다른 인권 영역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논의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 인종, 아동, 난민, 장애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에 의한 갈등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들에 대한 차별은 오랜 역사를 갖고 사회적 제도와 문화속에 자리잡고 있다.

장애인 문제도 이 연장선에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다. 흔히 장애를 선천적인 것, 타고난 죄인으로 보는 경향 때문에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편견이다. 장애는 약 95% 이상이 전쟁, 산업재해,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생긴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선천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생애에 죄가 있거나 아니면 몹쓸 짓을 한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능력의 차이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장애인은 그런 의미에서 비장애인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무능력한 사람(the disabled)이 아니라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the different-abled)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다른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할 때 평화와 인권의 문화가 꽃필 수 있다.

둘째는 장애인들이 장애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는 것이다. 장애인의 특별한 장애 자체가 특별한 요구(special need)를 지닐 수밖에 없다. 비장애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휠체어가 요구된다거나, 특수교육, 정신치료, 특수훈련 등을 비롯하여 교육, 의료 그리고 사회적 재활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소용되는 비용은 대부분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 총비용의 일부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90% 이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조기치료, 교육, 복지,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장애인 정책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편견에 의해 위축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교육이 일반시민적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장애인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

2)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문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사회시설은 아주 미비하여 최근까지도 거의 개선되지 않

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 지원 중심이어서 장애인의 직접적인 필요 경비라기보다는 시설의 유지와 행정비용에 상당 부분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조기치료나 조기교육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 및 개별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실제로 의료재활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관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용 기회가 폭넓게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수당이 1인당 4만 5천 원인 실정(2001년 기준)에서 일반적인 노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상당히 어렵다. 게다가 최저임금으로 고용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를 받을 수 없어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고용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고용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2001년 현재 대상업체의 장애인 고용은 0.95%에 불과한 실정이다. 15세 이상 장애인 중 28% 정도가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과 비실업상태라 할지라도 주로 농업, 단순노무직,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는 점은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장애아동의 교육기회가 아주 차별적이다.

조기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부모들이 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조기교육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통합력을 높여야 하지만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 부딪혀 결국 장애아동을 집안에 가두고 마는 비인간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분리가 아닌 통합 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3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대하는 것,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자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의 목표이다.

장애인을 측은하게 여겨서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좋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하다. 이 생각과 더불어 평등이라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도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형식적 평등)을 넘어 그들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실제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실질적 평등)이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다.

장애는 개인의 잘못만도 아니며 신이 내린 재앙도 아니다. 누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장애인이 되길 바라겠는가? 장애의 원인은 대부분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있다. 즉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장애는 나의 일이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장애인 인권문제에 민감해지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활동

1)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있어요

장애인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가정방문을 통해 장애인 권리선언을 함께 읽고 이에 대한 의식화교육을 함으로써 장애인 자신과 가족을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한다.

- 장애인 권리선언 게임, 이야기하기

2) 장애 체험

장애 체험을 해보고 장애인들의 어려운 생활을 공감해본다. 시각장애인 되어보기 혹은 휠체어 타고 동네 한 바퀴 돌기와 우리 학교 건물 5층까지 올라가기 등을 해본다.

- 장애 체험하고 공감하기, 브레인스토밍

3) 장애인 시설 현장견학

학교 주변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본다. 가능하면 장애인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그들의 삶을 공감하는 활동을 해본다. 덧붙여 방문한 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현장방문, 자원활동

4) 이렇게 고쳐주세요

장애인 인권문제를 다룬 신문기사나 자료를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토론해본다. 정책담당부서나 대통령에게 장애인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편지를 써본다.

- 조사학습, 편지쓰기

라. 평가

① 이 활동은 장애인의 삶과 그들의 인권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② 장애는 외모처럼 차이에 불과하며 장애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③ 이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11.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가. 목적

오늘날 인권과 대립되는 가장 비인간적인 행동은 인종차별이다. 이것은 자신과 다른 피부색, 문화, 종교, 국적, 그리고 종족 배경을 가진 타인에 대하여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멸시하고 비하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인종에 대한 불신과 혐오, 외국인 혐오와 모욕 그리고 편견 등은 지배적 인종이 자행하는 일상적인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다인종 사회에서조차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인종별로 완전 분리되어 거주하며 이질적인 문화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종간 충돌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오늘도 지구상에서는 매일같이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인종적, 문화적 차별에서 기인하고 있다. 특히 9·11 사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인종차별은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극심해졌다. 이 과정에서 종교는 차별을 심화시키고 편견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더 크며 평화를 위한 종교간의 대화 노력이 힘을 발휘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학교교육 역시 인종적 차이를 차별로 보지 않도록 하는데 무력한 측면이 있었다.

그 동안 인권교육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더 많다. 따라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인권교육을 통해 첫째, 인종주의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둘째, 식민주의가 빚어낸 남북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공존 가능한 세계를 창조하는데 기여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각국별로 확대되고 있는 내적 식민지화-내적 인종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내용

1)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국제협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A, B규약에도 반영되어 있고 독립적인 국제협약으로 1965년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이 발효되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자행되던 인종차별주의적 조치에 직면해서 1976년 국제연합이 취한 ‘아파트헤이트 범죄의 금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은 교육, 노동, 그리고 스포츠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인종차별은 인류에 반하는 폭력으로 간주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법률에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폭력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다.

2) 인종차별은 왜 생겼나?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인종을 생각하면 얼굴색의 차이가 왜 차별의 원인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지구공동체란 다양한 인종의 혼합 공간이다. 역사적으로 계급사회가 도래하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진 민족이 승리한 민족의 노예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한 민족에 의한 타민족 지배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특정 민족에 의한 장기간의 지배체제는 우수한 민족과 피지배

민족을 분화시키게 되었고, 특히 17세기 이래 교역과 군사력의 발달은 급기야 서구인에 의해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사냥되는 비극을 낳게 한 것이다. 이후 서구열강들의 세계분할체제, 즉 식민지화는 서구인에 의한 비서구세계의 식민화를 낳았고 그런 과정에서 백인은 우월하고 유색인은 열등하다고 믿는 인종주의가 차별적 지배이념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식민주의가 종식되고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잔존하는 인종차별주의는 가장 반인륜적인 야만적 사고유형인 것이다. 여전히 흑인이라는 이유로, 원주민이라는 이유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아랍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중심의 기독교적 문명세계라고 믿는 사회 속에서 차별당하고 있다. 교육에서부터 거주 공간, 고용기회에 이르기까지 유색인들은 엄청난 인간적 모욕을 감수하여야 하고 사회적 편견과 경멸에 시달려야 한다. 인종차별주의의 야만적 조류에 저항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인권운동을 전개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로서 서구의 복합사회가 안고 있는 인종차별주의를 국가 내부에서는 심각하게 접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오늘날 지구촌 세계에서는 타인종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인종간에 서로 다른 모습과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이 서구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유색인종임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 새롭게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해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용을 정책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 역시 서구 사회의 인종차별주의가 낳은 폭력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다.

인종차별주의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인종차별주의는 인류 공동의 적임을 인식하고 지구상의 모든 인권 옹호자들은 인종차별주의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실 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은 인종차별주의와의 투쟁이었다. 미국의 흑인해방운동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 역시 인종차별주의와의 싸움이었다. 제도화된 고정관념으로서의 인종차별주의는 사회를 편견과 적대 그리고 증오의 공간으로 만들므로써 힘에 의한 해결을 부추긴다. 복종과 지배, 침묵과 동화, 사회적 배제와 증오, 평화적 해결의 부재, 이것이 인종차별주의가 낳는 적대자 이미지이다. 이것을 공존과 용서와 화해, 그리고 관용의 이미지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불복종 운동 및 시민문화운동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더불어 지원체제의 수립이 요구되며 이것은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적 변화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인식과 사회적 통념의 변화를 위하여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인종차별주의를 당연하게 수용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기존 교육체제 안에서는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제7조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화적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어 자신에게 와닿기 전에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를 위한 교사연수와 특히 미디어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다. 활동

1) 지구 속의 색깔 찾기

세계 지도 속에 국가별로 얼굴 색깔 그려넣기, 이를 통하여 다양성을 확인하고 인종별 구성의 실제 크기를 비교해보자.

—모둠활동, 모듬토의

2) 일본 종군위안부 역사관에서 하는 '나홀로 인터뷰'

일제 식민지하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인권유린을 당한 역사적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역사관을 둘러보며 할머니에게 묻고 싶은 내용을 홀로 만드는 인터뷰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 현장학습

3) 외국인 노동자와 하루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략 15만 명을 넘는다. 이들은 한국이라는 낯선 문화권에서 무시당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다. 한국에서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하루를 지내며 우리 문화의 인종적 배타성을 느껴본다.

— 경험 나누기

4) W와 C 객차 칸으로 나뉘는 나의 인생— 한국인의 인종차별 경험

한국인은 자신의 인종적 동일시를 주로 백인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종적 감수성을 가진 당신이 1950년대 미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가정하자. 기차를 타려는데 차장이 당신을 'W(white)' 혹은 'C(colored)'로 호칭하며 백인 칸으로 가라 혹은 흑인 칸으로 가라고 한다. 백인 칸에 탄 나와 흑인 칸에 탄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자.

— 역할놀이 혹은 이야기하기

5)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

1968년 마틴 루터 킹은 극단적인 인종분리론자의 총에 맞아 숨졌다. 킹 목사에 대한 비디오나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비폭력적 인종차별 철폐 운동의 이상을 알아본다.

— 느낌 나누기

라. 평가

<p>① 인종차별 철폐 협약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권규약이다.</p>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p>② 우리 사회도 우리와 다른 민족·인종의 사람들을 더 이상 배척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p>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p>③ 앞으로 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나 탈북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p>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2. 노동의 권리 ■■■■

가. 목적

사람들은 누구나 일을 한다. 자신이 선택한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받고, 적절한 조건에서 노동하고, 노동권이 탄압받을 경우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이 사회적 위계구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되어 인간의 귀천을 낳게 하

고 그에 따라 노동의 착취가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노동의 권리가 가장 일차적인 인간의 생존권적 토대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노동력의 차별은 인권침해의 심각한 일면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저항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노동권은 직업선택의 권리,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권리,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 및 합리적 노동시간 조정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은 많은 국가에서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노동권이 제약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권에 대한 학습을 통해 **첫째**, 누구나 갖고 있는 노동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둘째**, 인간다운 삶이 부정되는 노동계의 실상을 이해하며 **셋째**, 아동노동의 폐해를 통해 인간다운 일할 권리의 필요성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내용

1) 사람은 어느 누구나 모두 동등하게 일할 권리가 있는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일을 즐겁게 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하지만 이런 자연의 질서가 인간 욕망의 무절제와 사회적 균형정책의 실패로 깨지면서 노동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소외당한 채 불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노동자 - 자본가 간의 심각한 대립과 사회적 폭력의 개입은 바로 일의 세계가 심하게 왜곡된 사회적 결과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와 제24조는 노동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설정하고 있다.

- 제23조 ①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
- ② 모든 인간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③ 모든 일하는 인간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존을 보장해주고, 필요한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해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24조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와 제7조에 의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고 있다.

그 외 ILO협약에 노동권의 기본 원리가 반영되어 있고 회원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일할 권리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 자신의 일하고자 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부여해야 하는 사회적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고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본적 권리를 파기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도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되고 비인권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원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고자 했던 이들의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일일 8시간 노동제와 파업권을 비롯한 각종 노동권의 방어기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 힘과 권한은 기업과 정부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자는 약자이고 아직도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많으나, 노동권의 보호가 신장된 결과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처럼 대화를 거치지 않고 물리력으로 탄압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높은 실업률이나 장기적인 불완전고용이 심화되어 일하고 싶어도 일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채 실업자로 방치될 경우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무능력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상당히 많은 경우 실업은 국가경제의 구조상의 문제로서 불공정한 부의 분배 때문일 것이다. 이 때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파업 등)를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는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국가가 완전고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교육과 훈련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조건을 보장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제8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①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해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떤 제한도 과할 수 없다.
- ②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 ③ 노동조합은 법률로서 정해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본 규약에서 말하는 노동조합 권리는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적법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3) 우리 사회에서 특히 보호되어야 하는 노동권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법으로 노동자의 제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변층에 머무르는 일용직 노동자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노동조합마저 결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가난으로 인해 그들의 자녀 교육 역시 심각한 손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노동권을 법령, 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서 보호해야 한다.

수많은 성인 장애인들 역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국가의 보조를 받으며 노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은 이들의 고용을 회피하고 있고 정부는 기업의 회피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방치된 장애인들은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으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동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이 일터까지 대중교통으로 다니기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차별, 격리하기보다는 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여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적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최근 어린이·청소년 노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다. 법적으로 18세 이하의 노동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특히 실업계 학생들은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라인에 투입되고 있다. 이들의 노동은 거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어리다는 이유와 불법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노동권이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보호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권에 대한 인권교육은 그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한층 더 절박하다. 그들이 노동인권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인권유린으로부터 스스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다. 활동

1)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자기 이미지를 긍정하기 — 노동의 귀천이 있는 사회현실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고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동일노동, 동일가치의 개념을 학습한다.

2) 가난한 어린이와 일할 권리

인도의 아동노동에 대한 비디오를 보면서 생존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어린이 노동조합인가 아니면 아동노동 금지인가? 아동 인권단체들도 이 문제에 관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관련 비디오를 보며 모둠별로 토의한다.

— 비디오 시청 및 모둠토의

3) 장애인동자와 함께 일터에 가기

장애인동자가 집에서 나와 일터까지 가는 데 겪는 난관을 함께 느끼고 일터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일터와 주변의 비장애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체험한다

— 체험학습

라. 평가

<p>①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노동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p>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p>② 노동권 학습을 통해 노동자들의 시위가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p>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p>③ 나의 일할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p>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3. 이주의 자유와 난민의 권리 ■■■■

가. 목적

인간은 누구나 국가 안에서 국적을 소유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나 기타 사회적 이유로 최초의 국적을 버리고 난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난민들이 망명을 신청하며 자신이 새로이 살 나라를 선택하여 국적 취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의 보호가 인류의 문명을 향상시킨다는 정신 아래 난민의 실상을 알리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함께 살아갈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이 밝힌 형제애 정신이다.

우리나라 역시 역사상 식민 통치와 분단으로 인한 내전 그리고 독재 치하의 정치적 박해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하며 삶의 터전을 타국에서 찾았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역시 지구촌 형제들의 지원과 형제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 망명을 신청하고 함께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모든 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기본적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도움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다.

따라서 난민보호의 권리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첫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난민의 실상과 처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둘째,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와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깨달으며, 셋째, 우리나라의 난민보호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 내용

1)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이동하고 있는가?

인류의 역사를 전쟁사로 본다면 그것은 곧 난민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을 피해 혹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등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는 나라를 찾아 필사적으로 이주를 시도하였다. 전쟁에 따른 난민 유입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혹은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조국을 등져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난민의 지위 부여에 대하여 많은 국가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피난민으로서의 이들의 지위는 비참하여 이들의 지위 문제가 새로운 국제적 사안이 되었다.

근래 아프리카 내전의 확산과 발칸지역에서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의해

수많은 전쟁난민들이 이주를 희망하였다. 난민 지위에 가장 너그럽다는 유럽조차 유고 난민이나 소비에트 붕괴 직후 발생한 구소련 난민들에 대해 난민지위 부여를 미루고 이들을 불법 이주노동자로 남게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사건 이후 대다수 아프간인들이 어렵게 국경을 넘어 배를 타고 호주와 뉴질랜드로 향하며 난민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였으나 호주는 난민지위 부여를 거부하였다. 이렇듯 난민이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인류의 의무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국가별로 지위 부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법적 지위와 생활상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을 내국인에게만 적용하는 한계를 넘어서 전 인류를 향한 권리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권교육이 요청된다.

난민지위의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세계인권선언 제13조와 제14조에는 어느 누구나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 모든 국가에서는 난민 신청이 있을 경우 비정치적 범죄를 제외하고는 해당국이 그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다.

제13조 ① 모든 인간은 각국의 경계 안에서 이동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인간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떠나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

제14조 ①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②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

이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2조와 제13조에 반영되어 있고 특히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특정 집단의 보호를 위한 문서로서 구체화되었다.

UN은 이들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간적 제 권리를 갖는다고 전제하면서 이들의 보호와 권리 존중이 인류의 의무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는 난민사무소를 세우고 난민지위 부여를 신청자에 한하여 심사한 후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들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내전이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이주를 희망하는 난민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문명의 진보이나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는 정치적 부

답이나 내국인들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기피 정서를 이유로 난민지위 부여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 국제기구가 노력하여 회원국들이 난민지위 부여에 더 협조적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로서 외부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난민들에 대한 지위 부여라는 외국인 정책은 상당히 낯선 주제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식민지 치하에서 일제 탄압을 피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사할린으로, 하와이로 이주하였고 전후 분단국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로 피난하였던 것이다. 특히 군부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프랑스나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희망했다가 민주화된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근대 정치사에서 망명과 해외 이주 그리고 난민지위 부여의 혜택을 받으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은 매우 엄격하고 소극적이다. 난민사무소의 위치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난민지위 부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미안하 사람들이 정치적 탄압을 피해 한국에 와서 18명이 난민지위 부여를 요청했으나,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위를 부여했을 뿐이다.

최근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중국과 우리나라에 요청하고 있지만 탈북 동기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과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정치적 탄압을 피해 찾아온 그들의 자유이주의 권리를 존중하여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우리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 활동

1) 유네스코가 제작한 국제이해 교육비디오 '난민의 실상' (15분용 비디오)을 보고 토의한다.

전쟁과 난민을 주제로 하여 난민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한다.

2) 탈북자는 난민인가 아닌가?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시한 난민의 기준에 맞추어 탈북자가 난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며 탈북자 수기를 모아 그들의 탈북 동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난민사무소 현장견학

우리나라 난민사무소(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찾아가서 난민사무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실무자와 토의하고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에 대해 토론한다.

— 현장학습

4) 미얀마 난민촌의 이야기

미얀마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압제를 피해 형성된 카렌지역의 대단위 난민캠프를 조사하고, 그 지역을 후원하고 있는 한국 네트워크로부터 그곳의 실정, 즉 식수 문제, 안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생존권의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여 필요한 후원활동을 결정한다.

라. 평가

<p>① 난민은 피난대열에 긴 사회적 약자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인간으로서 똑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p>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p>② 난민의 실상을 알고 전쟁과 폭압정치의 폐해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p>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p>③ 나의 문제를 떠나 주변의 중국인 동포나 탈북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p>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4. 평화와 비폭력적 갈등 해결 ■■■

가. 목적

전쟁의 참상위에 세워진 유엔은 인류 공통의 희구로서 전쟁 없는 평화를 정의, 자유와 더불어 도저히 양도할 수 없는 기초라고 전문의 서두에 밝히고 있다. 전쟁을 경험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쟁을 인류의 악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전쟁과 같은 폭력적 수단이 아닌 비폭력적 방법에 의해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자고 결의하고 있다. 사실 전쟁은 갈등 해결의 가장 반인륜적이고 치명적인 야만적 대응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평화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 또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권유린은 불가피하게 자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은 반드시 비폭력적 방법에 의해 일상적 갈등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평화교육은 평화문화를 조성하는 광범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에만 평화는 모두에게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사회적 갈등의 무력충돌을 예방하며, 그 결과 인류에게 행복을 보장한다. 따라서 평화와 비폭력적 갈등 해결 교육은 첫째, 전쟁과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여 평화체제를 희망하게 만들며 둘째, 갈등이 충돌될 때라 하더라도 폭력적 대응이 아니라 평화적, 비폭력적 대응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셋째, 궁극적으로 사회의 평화문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나. 내용

1) 평화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평화가 세계질서의 기초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고,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표현되었고,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즉 법과 정의에 의해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평화임을 세계 인권선언은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를 비롯한 유엔기구에서는 평화를 구체화할 각종 세부규정들을 만들고 이를 회원국들이 실천하도록 하였는데, 2000년 유엔총회가 결의한 ‘세계 어린이를 위한 평화와 비폭력문화 10년(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이 평화와 비폭력적 갈등 해결 노력의 구체적 성과이다. 다양한 폭력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구상의 어린이들에게 평화적 감수성에 입각한 교육을 함으로써 평화와 비폭력문화를 증진시켜 지구 마을을 평화와 비폭력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어린이와 성인,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폭력적 사회를 비폭력적 평화문화로 변혁시키자는 교육적 노력이 특히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3. 전 세계 평화운동가들이 모두를 평화롭게 지기 위한 지구상의 노력에 어떤 평화문화 확산을 이루었는가?

제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민족간의 충돌을 전쟁과 같은 야만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실이 국제연합의 결성이다. 전쟁과 폭력에 대한 평화적 대처 노력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부간의 기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비정부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도 발전되었다. 이들은 상호협력과 지원을 통해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또한 각종 교육요원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구체적으로 평화문화 확산을 이루어내었다. 군비삭감운동, 비핵화운동, 가난한 나라의 부채탕감운동, 대인지뢰금지운동 등 국가별 정의 실현 노력뿐만 아니라 성노예화 금지운동, 제3세계 어린이 매춘 금지운동, 인종차별 금지운동 등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였다. 1999년 헤이그 평화회의(The Hague Appeal for Peace) 10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부문의 평화 정착 노력과 비정부부문의 평화운동이 결합하여 ‘평화와 정의를 위한 헤이그 제안’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 평화운동가와 교육자들 수만 명이 모여 평화축제를 벌이면서 지구상에 다시는 인권과 정의의 실종을 가져오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 아래 ‘소형무기 국제행동 네트워크’, ‘평화교육을 위한 지구인 행동’, ‘국제사법재판소 비준을 위한 전 지구적 캠페인’, ‘지뢰금지 국제 캠페인’, ‘핵무기 폐기’, ‘전쟁방지를 위한 전 지구적 행동’, ‘소년병 사용 금지’ 등을 발표하였다. ‘헤이그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각국별로 진행 중이다.

3. 평화의 길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헤이그 제안’을 통해 발표한 평화교육 의제에서는 50항목 중 첫번째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

의 교육'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교육적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문화를 근절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세대는 질적으로 다른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교육은 전쟁 미화가 아닌 평화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계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평화교육은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지역권역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평화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 개발원조 담당자들은 교사 훈련과 자료공급을 통하여 평화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국가 평화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장단기적 실행안을 만들고 있다. 국가실행안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에서부터 교재 개발에 이르기까지 평화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적 기초를 다지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제안일 뿐 실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도록 권고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인가는 별도의 평화운동의 몫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의 폐해와 그 상처로 인해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교육이 통일교육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힘에 의한 평화유지를 지향하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선언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은 성과를 거두어 이전에 비해 평화적 통일교육의 정서가 확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교육을 남북한 관계 변화와 민주적 학교현장에 맞도록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다. 활동

1) 김구 선생의 이미지 그리기

모둠별로 김구 선생의 이야기를 모아 이상화한 평화와 통일 이미지를 그리고 설명하기

2)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활동

두 당사자간에 갈등이 있어서 지내기가 어려운 경우 제3자가 중재자가 되어 문제 해결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재활동을 시도해본다.

— 3명이 한 모듬이 되어 주어진 사례에 맞게 역할을 나눈다. 2명의 이해당사자와 한 명의 중재자가 중재과정을 밟는다.

3) 적극적 듣기

갈등 해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술로서 적극적 듣기는 상대방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10명씩 나누어 출발점에 있는 사람에게 문장을 주고 각종 제스처를 써서 이야기를 건네어 끝까지 가면 마지막 사람이 하는 말과 처음 문장을 대조해 본다. 듣기 태도나 메시지 전달의 방식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게 된다.

4) 전쟁과 어린이

신문활용교육을 통해 전쟁이나 폭력의 폐해가 어린이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5) 폭력은 싫어요

5명씩 모둠을 짜서 이유 없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때리거나 공을 받을 수 없도록 전달하게 되면 당사자는 매우 화가 나게 된다. 이로써 그는 폭력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게 되어 기분 나쁜 경험을 피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 평가

<p>① 갈등이 생길 때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p>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p>② 갈등 해결 교육은 나로 하여금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다.</p>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p>③ 앞으로 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p>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5. 국제연대와 인권 ■■■

가. 목적

지난 20세기를 거치면서 인류는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점과 인권은 개인과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전 인류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이상이며 과제라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권침해들을 해결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들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인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도 밑으로부터의 국제연대를 통해 유엔 및 정부가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비록 인권침해가 개별 국가나 지역의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제도나 구조만큼이나 국제적 질서와 권력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21세기 지구촌 사회에서 인권의 문제가 왜 세계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깊이 있게 성찰하도록 돕는 것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여기서는 **첫째**, 세계의 인권 상황을 알아보고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 이해와 협력관계를 이해하며, **둘째**, 국제기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세계평화와 인권문화 증진에 노력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발달시킨다.

나. 내용

1) 인권이 어떻게 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해졌는가?

인권이 개인적 차원 혹은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것은 20세기 초에 일어난 양대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이었다. 이전까지는 개별 국가 — 식민지를 비롯하여 — 의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정 간섭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쟁탈을 놓고 치뤄진 세계대전과 파시즘은 인류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특히 유대인 대학살과 일본의 원폭 투하, 여성성의 파괴 등은 인권의 문제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전 세계적 문제임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유엔은 1946년 2월 경제사회이사회 1차 회의에서 인권분야를 위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는 3년여 동안 활동한 결실로 1948년 유엔총회에 세계인권선언문을 상정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와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확립한 것이었다. 이후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발전된 각종 국제협약이

통과되고 국가별로 비준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들과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권의 영역도 크게 확장되었다.

이후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권(Rights to Solidarity)과 더불어 지구촌 공공선을 향한 움직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장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제3세대 인권' 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면서 인권문제가 국제적 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 의해 수탈의 역사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정치·경제·문화적 자주권, 둘째, 전 지구적 노력이 요구되는 평화, 환경, 문화의 공유, 셋째, 아동, 여성, 전쟁포로와 난민, 인종차별, 사형제도, 학살과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과 같은 특화된 영역들이 그것이다. 인권은 시대와 지역, 문화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수정되어왔으며, 이제 개인 혹은 단일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 연대를 요구하는 문제가 되었다.

2. 인권은 세계적 관심사이다

인권은 세계적 관심사다. 인권은 국경을 초월해 있으며, 세계 각 정부와 민족, 국제적 연합체들은 인권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묶여 있다. 이는 비록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라 할지라도 인류 전체가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런 인권문제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권력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를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해서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계시민의 의무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세계경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하여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난과 빈곤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세계인 모두가 극심한 개발로 인해 생명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핵개발로 불거지고 있는 국가간의 충돌 및 환경파괴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지구 환경파괴의 일차적 책임이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식민주의와 노예제도에서 연유하는 것이지만 현재 그 부담은 제3세계 국가들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구인은 이제 아무도 없다.

9·11 사태와 아프카니스탄 전쟁은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갔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다. 제3세계 여성과 어린이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극악한 처지에서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를 환호하는 동안에도 파키스탄 어린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피버노바라는 축구공을 만들다가 손가락을 잘리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들은 지구 공동체 모두의 문제이며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인류 전체의 몫이다.

이 국제인권을 위한 노력들은?

인권의 문제가 인류 공동의 문제인 만큼 그 해결과정에 특정한 개인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엔에서 인권을 전담하며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총 관리하는 기구는 UN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HCHR)로서 1951년 UN 결의로 생겨난 한시기구였으나 현재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각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은 UNHCHR에 정기적으로 인권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정부기구만이 아니라 비정부기구도 참여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도록 되어있고, 정부보고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민단체에서 반박 보고서도 낼 수 있다. 따라서 UNHCHR은 정부나 비정부기구가 신뢰하는 국제적인 인권기구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유린을 당하는 수많은 집단들이 UNHCHR을 통해 자신들의 기본적인 인간적 권리를 소명하고 있고 UNHCHR은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기구는 한계가 있고 특히 개별 국가의 지배권 아래 놓이기 때문에 개선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권을 향한 인류의 노력의 결과로서 세계적인 기구로 발전한 NGO 네트워크들이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인권감시연합(Human Rights Watch), 옥스팜 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 등 인권운동을 수십 년간 지속해온 범세계적 기구들은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인권상황 개선과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제사면위원회는 1961년 창설된 이래, 양심수 석방이라는 정치적 자유를 위해 투쟁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 폐지 등 보편적인 인류의 생명권 문제를 위해 노력했고, 오늘날 16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 NGO 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국민의 기본적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을 때 국제사면위원회의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원은 매우 값진 것이었다.

다. 활동

1) 인권지수 정하기

모듬별로 신문, 잡지, 매스미디어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대륙별 또는 국가별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점수화하여 우리가 만든 인권지수를 공개한다.

— 프로젝트학습

2) 우리 속의 국제문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 중 국제적인 문제 혹은 권력 관계와 연관이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해본다.

— 위안부,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문제 등을 주제로한 모둠토의

3) 인권기구 현장학습

국제적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단체를 찾아보고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며 또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지 현장견학 등을 통해 알아본다. 나아가 자신이 국제적인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보고 실천한다.

— 현장 방문, 편지쓰기, 기부하기 등

4) 빙고

국제 인권기구를 중심으로 설립연도, 하는 일, 국가별 지부 등을 학습하고 빙고게임으로 만들어 재미있게 국제기구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한다.

— 차트 및 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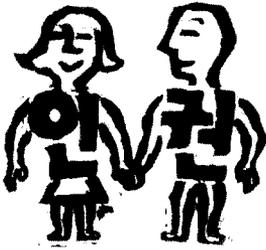
라. 평가

① 이 활동은 인권과 국제관계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연대는 중요하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③ 이 활동을 통해 세계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V

학교 인권교육의 실천 단위

1.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접근
2. 중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접근 ◀



우리 나라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의 실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자기 교과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인권 관련 주제나 학생활동들은 다양하여 국어, 영어, 체육, 과학 등 모든 교과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둘째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가능해진 재량활동을 활용하여 더욱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현재 범교과주제로 24개 주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본래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별로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 8주 또는 길게는 12주까지 단원으로 잡아 장기적 계획을 세워 인권교육을 시도한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셋째는 특별활동을 활용하여 인권교육반을 운영해보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재미있게 시도하면 이것 역시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인권교육 활동이 된다.

넷째, 학급운영의 원리로 제시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조례나 종례를 이용한 지속적 인권교육 그리고 학급회의를 이용한 인권교육의 실행은 인권교육의 중요한 사례를 낳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실험해보고 그 결과를 갖고 종합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초·중등교육에서 인권교육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1.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접근 ■■■■

초등학교는 아동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동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진행해야 할 교육활동이며 이는 동시에 인권교육의 출발점이다. 각자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권리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 관심을 갖는다. 그 환경들은 저마다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연관되어 있으며 아동들은 그 연관의 고리들을 발견하면서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자연세계에 대한 지식은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예술과 문학 등과 관련되어 있다. 자기 마을 생태계에 대한 학습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책임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은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권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인간은 어떤 형태이든지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아간다. 학교는 대표적인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마도 정의와 민주주의일 것이다.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길러진다. 어떤 사람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저항하고 연대해줄 수 있는 태도는 아동들의 생활 장면 곳곳에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다양성의 인정은, 예를 들어 다양한 생명들이 생존에 필요한 자기만의 기능유지 방식을 가진다는 것과 균형 잡힌 환경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생명을 증진시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길러진다.

우리 사회는 각 개인의 다양한 재능을 필요로 한다. 과학자, 미술가, 예술가 등등 이 모든 재능들은 개인들 사이의 차이에 기초한 것이며 이것이 존중될 때 인권은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다양한 개성을 확인하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이를 좀 더 확장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 모두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게 될 때 진정한 지구촌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하루 종일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호흡을 맞출 수 있다. 특히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학년의 경우 세계인권선언의 주요한 항목들을 이용한 교육에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저학년의 경우는 인권의 기초가 되는 주요한 가치들을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 등이 저학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인권과 관련된 부서를 만들고 다양하게 활동해볼 수도 있다. 최근 인권교육과 관련된 책과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교육과정에 인권의 가치와 내용을 통합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문학과 미술 작품, 음악 등은 인권교육을 위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재량활동 시간에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과와 연계되지 않으면 인권교육은 단일 교과로 머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해볼 수 있다.

첫째,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전 학년에 걸쳐 1주일에 2시간을 재량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중 한 시간은 학교나 학년, 담임 재량으로 창의적인 재량활동 시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학년의 경우 창의적인 재량활동 시간에 세계인권선언의 주요한 항목들과 인권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들 —이 주제들은 앞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아동들과 인권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학년의 경우는 이 시간을 이용해 인권의 기초가 되는 주요한 가치들을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각종 인권교육과 관련된 교재들과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된다.

둘째,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인권과 관련된 부서를 만들고 다양하게 활동해볼 수도 있다. 특별활동의 경우도 재량시간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몇몇 초등학교에서는 주제별로 체험 중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또한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이 한 반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점이 있다. 상위 학년은 아래 학년에게 그들이 먼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기능 등을 나누어줄 수 있어서 하위 학년은 토론이나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교육과정에 인권의 가치와 내용을 통합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인권의 주제와 내용은 인권과 관련이 많은 사회, 도덕을 비롯하여 모든 과목에 통합될 수 있

다. 사회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현상들에 인권적 문제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도덕의 경우는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치들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용, 우정, 공감, 정의, 타인에 대한 배려 등과 관련된 가치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수학의 경우 그래프와 통계를 다룰 때, 인권과 관련된 여러 통계들을 소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래프를 통해 현재의 인권상황뿐만 아니라 인권상황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국어와 같은 과목에서는 글쓰기의 소재를 인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경이나 소재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학작품을 수업에 도입할 수가 있다. 또한 미술이나 음악 등은 인권교육의 소재가 될 뿐만 아니라 활동의 결과물을 예술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넷째, 초등학교 아동들에게는 인권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능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해야 할 것이 인권적인 생활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이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생활 전반에 걸쳐 자극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학급을 운영하는 데서 교사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 가치에 인권이라는 가치가 함께 녹아나는 학급운동을 한다면 생활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학급운영이나 생활지도에 쓰일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아직 많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권을 존중하는 대화법, 분쟁(갈등) 조정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에서는 스톱(잠깐)제를 운영한다. 한 학생이 누가 자신을 놀리거나 괴롭혔을 때 스톱을 외치면서 그 이유를 말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 라고 말함으로써 간단한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옴부즈맨, 인권 관련 기념일 행사(장애인의 날에 장애체험 해보기 등, 부록 「인권달력」 참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약간 변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잘한 아동에게 사탕을 나누어주는 경우 그냥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탕을 '우리 반 사탕주머니'에 넣고 그 주머니가 다 차면 반 모두가 나누어 먹는 식으로 말이다. 새로운 반의 학급운동을 시작할 때 흔히 규칙을 정한다. 이때 '우리 반 인권선언문'을 채택할 수도 있고, '비폭력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차별에 대한 선언문과 규칙을 정할 수도 있겠다.

2. 중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접근 ■■■

중·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되돌아보고 나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또한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토론과 토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 시기에서는 세계인권선언 및 어린이·청소년 권리 협약의 권리항목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검토하는 학습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 및 세계의 비인권적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방법들을 모색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등학교에서는 인권교육을 대부분의 교과목이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과 학급운영에 도입할 수 있다.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사의 자율적 판단 하에 일정기간의 시수별 단원을 구성하여 인권교육을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된다. 물론 이때 인권교육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을 체험학습과 연계시켜주면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업시간 안에서 인권 주제를 교과목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가능한 교과별 사례들을 제시해봄으로써 중·고등학교에서 인권교육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회와 역사

역사는 인권교육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인류역사 그 자체가 인권의 발달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인권신장에 기여한 여러 운동, 선언, 협약, 의정서에서 선포된 기준과 원칙들을 역사 속에서 더듬어볼 수 있다.

현대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인권 관련 문제와 인권침해 사례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국가들의 시민혁명을 돌아보면서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표명된 권리들과 시민혁명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들을 비교해서 검토해 볼 수 있고, 각 권리들이 어떻게 발전되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현대사를 되짚어보는 과정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나 독재정권 하에서의 인권유린 등을 주제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인권과 평화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소개할 수 있다. 교사는 전쟁에 의해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그리고 거꾸로 그러한 인권침해가 어떻게 전쟁을 유발하는지에 관해 지적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로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 이런 전쟁들의 원인과 전쟁이 낳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학생들과 토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생활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무와 자질을 인권과 연관지어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참여적 수업방식을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 관련 쟁점에 학생들이 퍼포먼스, 캠페인 등의 형태로 참여하거나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족자결권을 논의하면서 민족독립투쟁과 식민주의 배격에 관한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개발, 종족분쟁, 균형 잡힌 환경과 문화적 인정과 같은 최근의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인권 수호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선언과 문서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출현해왔는지를 우선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나. 도덕

우리나라에서 도덕이나 윤리는 가장 정형화된 가치교육 교과이기 때문에 인권교육 주제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 도덕은 인권에 관한 토론을 도입하는 데 적합한 과목이며, 인권과 관련해서 정의의 문제와 평등과 같은 인권의 가치와 쟁점을 토론하기에 적합하다.

이 과목에서 국제문서들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으며 권리와 책임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면서 어떤 준거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가치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도덕과 교사들이 인권교육을 주제로 설정하여 수업을 하고 있다.

다. 과학

자연과학을 가치중립적인 영역으로 보고 기술과 문명이 우리에게 이로움만을 준다고 여김으로써, 우리는 전쟁과 무조건적인 개발, 지구환경의 위기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오늘날 기술과 문명은 우리가 전쟁이나 지구환경의 위기라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때만 가치가 있다. 기술과 문명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보면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자연과학적 개념이나 지식을 다룰 때 인권과 관련하여 사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의 성분과 속성에 대해 다룰 때, 교사는 물 마시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이고 권리라는 사실을 지적해줄 수 있다. 문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서 여성과 여자 어린이들은 아주 먼 곳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휴식과 여가의 권리와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인권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생물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 교육을 아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라. 음악과 미술

모든 예술교육은 인권교육에 매우 적합하며,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역사를 학생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민속음악이나 민요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음악들은 종종 민중운동이나 사회운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민간음악의 배경이 된 역사적 사건들과 사회집단이 이 음악을 창작할 당시의 조건들을 조사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중가요 등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예를들어 요즘 대중 가요로 다시 선보이고 있는 '사계' 를 듣고 공정하고 적합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이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구절을 토대로 작사, 작곡을 해보도록 제안할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은 음악의 배경을 소재로 한 시를 창작해볼 수도 있다.

미술은 학생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미술작품은 그 작품이 품고 있는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공유하게 한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다룰 때 이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혹은 어떤 계기로 제작되었는지 알아보고 토론할 수 있다. 또한 활동의 결과들을 미술을 통해 표현해보고 결과물을 전시하고 공유할 수 있다.

마. 체육

체육은 단체훈련이나 심신단련을 위한 교과로서 그 자체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과이다. 체육 시간에 구기를 할 경우 규칙을 알고 존중하게 하는 것은 법과 질서로 유지되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또한 경기 중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대화와 타협과 합리적 논의에 의해 해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 전통의 놀이체조나 경기를 통해 민족문화를 학습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체육은 달리기, 높이뛰기, 공던지기 등과 같은 개인적 체육지수를 확인하기 위한 교과가 아니다. 학생들은 집단적 활동을 통해 경기의 즐거움도 익히고, 규칙을 알고 지키며 상호 협동하는 가치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도 익힐 수 있다.

바. 수학

수학은 통계나 그래프를 이용해 특정한 권리에 대해 접근하기 좋은 과목이다. 문화적 권리와 관련해 제3세계의 비문맹률, 재학률, 고등교육 진학률에 관한 통계표나 통계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

다. 여기서 남녀별 통계를 비교해봄으로써, 이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데 성적 차이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관련하여 유엔 또는 유네스코, 유니세프,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전문기구가 제공하는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그런 기구들의 주된 임무이며, 인권 실현의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의 권리,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와 같은 경제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고용 및 실업에 관한 그래프를 활용해 성이나 지역, 학력별로 비교,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시대별로 변화 추이를 보여줌으로써 인권이 어떻게 신장되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 국어

국어는 자국의 언어와 문학세계를 다루는 교과로서 그 자체가 인권 교과이다. 사실 문학 작품들은 그 시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노예제, 아동노동, 여성차별, 전쟁과 같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자행되어온 불의의 사례들을 인식하는 데 문학작품들은 기여해왔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와 관련해 좋은 작품들을 읽도록 권장할 수 있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조지 오웰의 『버마의 나날들』, 이광수의 『흙』, 황석영의 『객지』와 같은 작품은 인권의 각 주제에 대해 훌륭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는 인간의 고통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고통은 어떤 사건이나 조건들로 인해 생기는지, 이 고통의 상황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불의의 한 형태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기물은 특정한 인권을 위해 싸워온 인물들의 생각과 고민을 풍부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된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 킹, 전태일, 유관순, 김구 등의 전기문은 인종차별, 민족차별, 신분차별, 노동권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유용할 것이다.

어떤 문학작품이어도 상관없겠지만 우리나라의 작품을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좋을 것이다. 우리의 문학작품은 우리들이 살아온, 또는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자신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 내에서 이 작품들을 이해하고 생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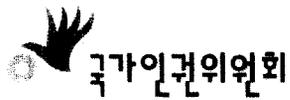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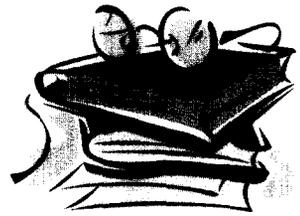
이. 외국어

외국어의 경우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람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이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감을 심어줄 수도 있다. 또한 특정한 나라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외국어 지문을 활용하여 외국어

교육과 더불어 인권 관련 내용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 교과는 입시 교과로만 여겨져 외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언어를 통한 타 문화의 이해, 관련 지문을 통한 인권 지식의 함양을 가능케 하고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지구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어 국제적 감각을 익힌 인권활동가를 양성할 수도 있다. 외국에서 외국어 교과는 매우 유용한 인권 교과 혹은 세계교육 교과로서 인식되어 이 분야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 아주 높다. 따라서 영어를 입시 교과로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타 문화 이해를 위한 인권교육 교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문헌



참고문헌

- | 강순원(2000). 「평화 인권 교육」. 한울.
- | 강순원 외(2001).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정책방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연구과제.
- | 가우디 엮음(1999). 「왕따 리포트」, 우리교육.
- | -----(1999). 「어린 왕따 민순이」, 우리교육.
- | 김정래(1998). 「교육권과 학습권」. 『아동권리연구』 제2권 제1호, 5~24쪽.
- | 배경내(1998). 「한국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민변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집」, 263~308쪽.
- | -----(2000).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 | 백영애(1998). 「인권교육 수업 프로그래밍」. 『98 전국 도덕교사 여름연수 자료집」.
전국도덕교사모임.
- |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내일을여는책.
-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7).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 | ----- (1995).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아동의 권리 협약
교사용 지침서.
- | ----- (2000). 「모든 인간은…」 사람생각.
- | 이명준 외(2000). 「인권교육 체계화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보고서.
- | 이용교 외(1999).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동향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 인권교육 사랑방(1999). 「인권교육 길잡이」. 사람생각.
- | 정인섭 편역(2000).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 | 정태수(1991). 「아동의 권리조약-청소년의 권리」. 예지각.
- | 조상희(1986). 「교육권의 이론과 학습권의 이론」. 『교육현실과 교사』, 청사, 92~141쪽
- | 조영달(1998). 「한국청소년의 인권과 교육」. 『현대사회와 인권』. 한상진 엮음. 나남, 353~378쪽.
- | 조혜정(1997).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하나의문화.
- | ----- (1998). 「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권을 다시 생각함: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자」.
『21세기를 향한 청소년정책』. 아우내재단 미래문화연구원 청소년정책토론회, 29~51쪽

-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1997).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참여연대.
- | 천정웅, 김영지, 김경호(1999).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 문화관광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 | 최윤진(1998). 「청소년의 권리」. 양서원.
- | ---- (1999). 「청소년 인권정책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 | 통일부(2000). 「2001년도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 | 한국아동권리학회(1999년). 「세계아동인권교육의 추세」.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년 추계 학술대회.
- | 한국청소년개발원(1996). 「청소년 인권 보고서」. 연구보고서 96-09.
- | ----- (1999).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동향 연구」. 연구보고 99-R46.
- | 한국청소년학회(1999). 「청소년 인권정책 연구」.
- | 한상진 편(1998).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
- |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 엮음(1999).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 Amnesty International(1996). *Our World, Our Rights - Teach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Primary School*.
- | ----- (1998). *Guideline for Human Rights Education for Teachers*.
- | Amnesty International Hongkong. *All for Human Rights & Human Rights for All*.
- | UNESCO(1998). *All Human Beings...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e Teacher's Library UNESCO Publishing.
- | United Nations(1998). *HUMAN RIGHTS -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Lessons for Life*.



인권달력

1월

- 1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일(1976년)
- 3일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일(1969년)
- 4일 세계 문맹퇴치의 날
- 8일 셋째주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 (1월 15일: 킹 목사 탄생일)

2월

- 20일 비폭력 저항의 날

3월

- 8일 세계 여성의 날
-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22일 세계 물의 날
- 23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발효일(1976년)

4월

- 5일 식목일
- 7일 세계 보건의 날(1948년 WHO 설립기념일)
- 19일 4.19 혁명 기념일
- 20일 장애인의 날
- 21일 과학의 날
- 30일 홀로코스트 기념일(제2차 세계대전 중 나찌 죽음의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은 날을 기념)

5월

- 1일 세계 노동절 / 근로자의 날
- 1일 법의 날
- 5일 어린이날
- 15일 세계 가족의 날 / 스승의 날
- 16일 문화발전을 위한 UNESCO 날
- 18일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6월

- 3일 세계 출판자유의 날
- 4일 UN 아동폭력 예방의 날
- 5일 환경의 날
- 10일 1215년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조인의 날
- 15일 6.10항쟁 기념일
- 17일 세계 사막화 및 가뭄과의 투쟁의 날
- 26일 UN 헌장 기념일
- 26일 고문방지 협약 발효일(1987년)
- 26일 세계 약물남용과 인신매매 반대의 날
- 26일 세계 고문희생자 지지의 날



7월

- 11일 세계 인구의 날
- 14일 파스티유의 날(1789년 파리 바스티유 감옥 해방의 날)
- 26일 원자 폭탄의 날(1945년 원자폭탄 최초 폭발의 날)

8월

- 6일 히로시마 날 (1945년 최초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희생자 기념일)
- 9일 세계 원주민의 날
- 12일 세계 청년의 날
- 15일 광복절
- 23일 세계 노예매매 및 노예제 철폐 기념일

9월

- 2일 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 발효일(1990년)
- 3일 여성차별철폐협약 발효일(1981년)
- 7일 사회복지의 날
- 15일 세계 평화의 날

10월

- 첫번째 월요일 세계 아동의 날
- 1일 세계 노인의 날
- 2일 우리나라는 2일이 노인의 날
- 10일 세계 정신보건의 날
- 12일 세계 원주민의 날
- 16일 세계 식량의 날
- 17일 세계 기아근절의 날
- 17일 세계 관용의 날
- 20일 문화의 날
- 24일 국제연합일
- 31일 UNICEF 아동의 날

11월

- 3일 학생의 날
- 9일 농업인의 날
- 9일 세계 파시즘과 유대주의 반대의 날
- 11일 세계 과학과 평화의 날
- 25일 세계 여성폭력 근절의 날
- 25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창립기념일(2001년)

12월

- 1일 세계 AIDS 날
-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 3일 소비자 보호의 날
- 3일 사회적·경제적 발달을 위한 세계 자원봉사자 날
-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인권 관련 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

평화 · 인권 일반 ■■■■■

- 광주인권운동센터

<http://www.ingwon.org>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http://picis.jinbo.net>

- 다산인권센터

<http://www.rights.co.kr>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사회진보연대)

<http://pssp.jinbo.net>

- 새사회연대

<http://www.newsolidarity.org>

- 울산인권운동연대

<http://ulsanhr.jinbo.net>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http://www.khis.or.kr>

- 인권실천시민연대

<http://hrights.or.kr>

-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 좋은벗들

<http://www.jungto.org/gf>

- 지문날인 거부운동

<http://fprint.jinbo.net>

- 진보네트워크

<http://www.jinbo.net>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천주교 인권위원회

<http://www.cathrights.or.kr>

인권관련 사이트

- 평화인권연대
<http://peace.jinbo.net>
- 한국이웃사랑회
<http://www.gni.or.kr>
-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http://www.koreayc.or.kr>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CNPK)
<http://www.peacekorea.org>
- 전국중고등학생연합
<http://www.union10.org>
- 중고등학생복지회
<http://www.hitel.net/~k2sws>

아동 및 청소년 인권 ■■■■

- 아동학대 방지
<http://www.1391.co.kr>
- 아동학대신고상담센터
<http://www.childabuse.or.kr>
- 아동학대지킴이센터
<http://user.chollian.net/~enoch65>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http://kapcan.welfare.net>
- 한국어린이보호재단
<http://cpfk.or.kr>
- 학생행동연대
<http://sas.jimbo.net>
- 청소년인권센터 1
<http://www.yrights.or.kr>
- 청소년인권센터 2
<http://www.youthright.or.kr>
- 해를캐는아이들
<http://www.youth.inchon.kr>

인권교육 ■■■■■

- 광주학생생활연구회
<http://selfcom.new21.org>
-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http://www.inkwonedu.x-y.net>

환경 및 보건의료 ■■■■■

-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 여성환경연대
<http://www.ecofem.net>
- 청년생태주의자 KEY
<http://www.jinbo.net/~antinuke>
-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http://www.kgca.org>

-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건강사회로 가는 길)
<http://medroad.peacenet.or.kr>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http://www.humanmed.org/neo>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http://myr.jinbo.net>

소수자 인권 ■■■■■

-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http://www.migrantworkers.org>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http://www.migrant.or.kr>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http://jcmk.jinbo.net>
-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http://migrant.nodong.net>
- 장애인 이동권 장치를 위한 연대 회의
<http://access.jinbo.net>

인권관련 사이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 노들장애인가간학교
<http://www.nodle.or.kr>
- 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한 올바른 사회 인식을 위하여
<http://user.chollian.net/~torez>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 끼리끼리
<http://www.kiri.simin.org>
- 동성애자웹진 버디
<http://www.buddy79.com>
-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outpridekorea.com>
- 친구사이
<http://chingu.go.to>

여성 인권 ■■■■■

- 또하나의문화
<http://www.tomoon.org>
-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
<http://www.gender.or.kr>
- 여성부
<http://www.pcwa.go.kr>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http://wmp.jinbo.net>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wnet.org>
-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kncw.or.kr>
-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 한국여성사진가협회
<http://www.kowpa.or.kr>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http://www.womenvoters.or.kr>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http://safe.jinbo.net/>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k-comfortwomen.com>
- 한소리회
<http://www.han-sori.org>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UN ■■■■■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 유니세프 유스클럽
<http://youth.unicef.or.kr>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http://www.unhcr.or.kr>
-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http://www.unep.or.kr>
- 주 국제연합 대한민국대표부
<http://www.un.int/korea>
- 유엔뉴스(Eng)
<http://www.unnews.co.kr>

인권관련 사이트

기타 ■■■■

- 동티모르연대모임
<http://timor.peacenet.or.kr>
- 문화개혁시민연대
<http://www.cncr.or.kr>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http://minbyun.jinbo.net>
- 민주주의 · 사회운동 · NGO자료관
<http://www.demos.or.kr>
- 민주화운동자료관
<http://www.democracymuseum.or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www.icdemocracy.or.kr>
- 미얀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Free Burma!)
<http://www.freeburma.or.kr>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http://sofa.jinbo.net>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http://ktu.or.kr>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http://www.ugh.or.kr>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 제주 4·3 진상규명 ·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http://www.cheju43.org>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www.usacrime.or.kr>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http://landmine.peacenet.or.kr>